

202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추계학술회의

번역과 전환기 정치사상

2021 **11.11** THUR



韓國東洋政治思想史學會

ZOOM을 통한 온라인 개최

202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추계학술회의

2021 **11.11** THUR



번역과
전환기 정치사상



19:00~19:10	개회사 강상규(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회장)
19:10~20:30	제1세션
사 회	이택휘(서울교대 명예총장)
제1발표	김현주(원광대 HK교수) 「만국공법」(2021)
제2발표	김현(연세대 정치학과 연구원), 송경호(연세대 통일연구원) 「서양사정」(2021)
제3발표	소진형(서울대 선임연구원), 홍철기(서강대 전임연구원) 「서양을 번역하다」(2021)
토 론	라운드 테이블(참석자 전원 자유 토론 참여)
20:30~20:40	휴식
20:40~21:50	제2세션
사 회	정윤재(한국학중앙연구원)
발 표	서희경(서울대) 「한국헌정사 1948-1987」(2020)
토 론	라운드 테이블(참석자 전원 자유 토론 참여)
22:00	폐회

2021년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존경하는 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의 위협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피로감이 느껴집니다만, 계절은 바야흐로 만추의 절기로 접어들었나 봅니다. 따스한 햇살과 들녘의 바람과 농부의 땀으로 가을 추수하는 심정으로 우리 학회에서도 추계학술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계학술회의에서는 어떤 발표와 토론이 우리를 어떤 각성과 설렘의 시간으로 안내하게 될까요?

이번 추계학술회의 주제는 <<번역과 전환기 정치사상>>입니다. 아편전쟁 이래 거대한 서구의 충격과 역사적 혼돈의 시기에 나타난 문명기준의 긴장은 동서양 언어의 첨예한 충돌과 사상의 각축을 수반하였습니다. 그리고 19세기의 고유한 문명 의식과 상이한 외래의 문명기준이 서로 경합하고 대결하며 절충되던 전환기의 정치사상은 고스란히 역사적인 저작 안으로 녹아들어 응결(凝結)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의 결정(結晶)체를 이번에 우리 학회 선생님들의 번역작업을 통해 다시 새롭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보람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이에 관한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한편 제2세션에서는 근린 제국주의 일본의 지배 아래 힘겨웠던 시간을 견디며 어렵게 맞이한 대한민국의 국가 만들기 작업에 관해 다루게 됩니다. 길고 긴 인고(忍苦)의 세월을 거쳐 다가온 해방의 감격을 제대로 만끽할 틈도 없이 한국은 냉전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세계사적 격류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떤 기준에 입각하여 헌법을 정하고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위기의 시대를 살았던 전환기 한국의 헌정사를 재조명하는 대작을 출간한 서희경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시 묻고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추계학술회의는 평일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ZOOM으로 진행합니다. 학회 회원 선생님들께서 최대한 많이 참석하셔서 성찰과 소통의 시간을 할 수 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계학술회의를 통해 젊은 연구자들의 성취와 학문적 열정을 격려해주시고 북돋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21년 11월 11일
강상규 배상

202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추계학술대회

번역과 전환기 정치사상

개회사		19:00 – 19:10
회 장	강상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1세션		19:10 – 20:30
사 회	이택휘 (서울교대 명예총장)	
제1발표	김현주 (원광대 HK교수) 「만국공법」 (2021)	
제2발표	김현 (연세대 정치학과 연구원) · 송경호(연세대 통일연구원) 「서양사정」 (2001)	
제3발표	소진형 (서울대 선임연구원) · 홍철기(서강대 전임연구원) 「서양을 번역하다」 (2001)	
토 론	라운드 테이블(참석자 전원 자유 토론 참여)	
Coffee Break		20:30 – 20:40
제2세션		20:40 – 21:50
사 회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발 표	서희경 (서울대) 「한국헌정사 1948-1987」 (2020)	
토 론	라운드 테이블(참석자 전원 자유 토론 참여)	
폐회		22:00

목 차

▣ 만국공법 (2021)		13
김현주 (원광대)		
▣ 서양사정 (2021)		35
김현 (연세대) · 송경호 (연세대)		
▣ 서양을 번역하다 (2021)		49
소진형 (서울대) · 홍철기 (서강대)		
▣ 한국헌정사 1948-1987 (2020)		55
서희경 (서울대)		

만국공법 (2021)

김현주 (원광대)

『만국공법』: 중화 질서와 근대 세계 질서의 만남¹⁾

김현주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교수

I. 서론

『만국공법(萬國公法)』(1864)은 미국 외교관이었던 휘튼(Henry Wheaton)이 쓴 『국제법 원리』(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중국에 선교사로 와 있던 윌리엄 마틴(William Alexander Parsons Martin)이 1864년 중국어로 번역하여 출간한 국제법 저서이다. 『만국공법』은 근대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이 서구의 국제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입문서의 역할을 한 중요한 번역서이다. 그와 동시에 이 책은 전통적 중화 질서와 근대 세계 질서의 조우와 갈등을 보여준 상징적 번역서이기도 하다.

휘튼이 썼던 『국제법원리』는 비교적 두꺼운 전공 서적이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외교적 사례들을 많이 다루었다. 그 중에서 중국의 외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만을 추려냈기 때문에 『만국공법』은 원저인 『국제법원리』에 비해 비교적 얇은 책이 되었다. 『만국공법』을 미국인 선교사 마틴이 번역했다고는 하나 중국인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동문관의 교사로 있었던 마틴은 동문관 학생들의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만국공법』의 서문을 남겼던 중국 관리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런 만큼 『만국공법』 속에는 동양과 서양의 사상과 제도가 함께 녹아 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둘의 만남은 중화질서와 서구질서의 만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의 만남은 그다지 유쾌하고 달가운 만남은 아니었다.

청나라 정부와 지식인들은 오랜 동안 주변의 여러 나라들 속에서 한자 및 유교 문화권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중화 질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근대 세계 질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보여준 마지막 저항 의식이 번역어와 번역 내용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따라서 『만국공법』이란 번역서를 통해서 우리는 중화질서와 서구질서의 갈등을 읽을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번역을 통해서 서구의 질서를 이해하고 조우해야만 했기 때문에 번역의 과정에는 나름의 인식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낯선 질서와의 화해의 과정을 엿볼 수 있다.

『만국공법』을 통해 중국이 서양의 국제법과 국제 질서를 처음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이 국제법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은 200년 전이었던 1662년부터 1690년까지 네덜란드와 교섭 과정에서였다. 중국과 네덜란드의 첫 만남은 네덜란드인들이 청나라 정부로 하여금 무역을 개방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을 위해 네덜

1) 이 글은 저자의 논문 「중화질서의 해체와 그에 대한 청 정부의 대응 : 『만국공법』을 중심으로」(아세아연구62(1) 2019.03)와 「만국공법에 대한 청말 지식인의 인식과 현실과의 괴리」(정치사상연구26(1) 2020.05)에서 발췌된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글이다.

란드는 1655년 북경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순치제(順治)를 만나고자 했다. 그런데 당시 순치제는 네덜란드를 조공국(朝貢國) 중 하나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8년에 한 번씩 조공 무역을 하는 것만을 허락해주었다.

그러한 관계가 더 발전하게 된 계기는 정성공(鄭成功)의 대만 수복 사건이었다. 1661년 정성공은 대만을 공격했다. 이에 대해 청나라 정부는 정성공이 주둔하고 있던 금문(金門)과 하문(廈門)을 공격하기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당시 네덜란드가 멋대로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공동 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정성공이 대만을 점령한 이후, 1662년 8월 네덜란드 사령관 발타자르 보트(Balthasar Bort)는 군대를 이끌고 복주(福州)에 와 다시 한 번 청나라와 연합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때에는 정성공이 죽고 후계자인 정경(鄭經)이 청나라 정부와 화해를 원했기 때문에 연합은 무산되었다. 그 이후 보트는 10월 21일 천주(泉州)에 와서 함께 금문과 하문을 공격하고, 바로 대만을 공격하자고 제의했다. 대만 공격에 청나라 정부가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연합군 결성을 위한 협의서에는 조인하였다. 같은 해 11월 18일 네덜란드가 단독으로 정군(鄭軍)을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11월 19일 청나라와 네덜란드의 연합군이 다시 정군을 공격하여 격퇴했다. 네덜란드와 협력을 위해 협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청나라 정부는 서구의 국제법을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나라 정부는 이것을 단순히 일회적인 사건으로만 여겼을 뿐, 네덜란드를 비롯한 서구 국가들의 국제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그 수용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는 못했다.

그 이후 순치제의 뒤를 이은 강희제 28년(1689)에는 러시아와 네르친스크(Nerchinsk) 조약을 맺기도 했다. 당시 청은 예수회 선교사인 토마스 페레이라(Thomas Pereira)와 프랑수와 게르빌롱(Francois Gerbillon)의 국제법 지식의 도움을 받았다. 게르빌롱의 일기에 의하면, 당시 조약 체결의 책임을 맡았던 흠차(欽差)대신은 다른 국가와 조약을 맺어본 경험이 전혀 없었고, 국제법에 대한 이해도 전무했다.(張誠 1973, 45-46) 페레이라는 흠차대신에게 국제법의 요소인 국가 간의 평등과 호혜의 정신은 물론, 조약을 체결할 때 상호 간의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지만(約瑟夫·塞比斯 1973, 114), 서구 국제법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 그쳤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중국 최초의 조약이라고 불리는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중국이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받아들리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영국의 전권대사인 매카트니(George Macartney)가 건륭(乾隆) 58년(1793)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중국이 매카트니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아홉 번이나 조아려야 하는 삼궤구고두례(三跪九叩頭禮)를 요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은 영국에 대해서도 조공의 예를 요구한 것이었다. 그것을 거부하는 매카트니에 대해 건륭제가 약식 인사를 허락하기는 했지만, 양국의 외교관계는 성립하지 않았다. 당시 매카트니는 원명원에 머무는 동안 대학사, 호부 상서 등 중국 고위관원들에게 국제법과 국제관례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 알려주었다.²⁾

2) 매카트니가 알려준 국제법의 내용은 수교, 사신 교환, 영사의 주재, 등에 관한 것으로, 청과 수교하여 영국 대사를 베이징에 주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청은 천조(天朝)와 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張小林 2005)

그 후 외국과의 교류가 늘어나고, 외국과 충돌하는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서구 국제법에 대한 관심도 점차 늘었다. 그에 따라 그것을 소개하는 내용의 책들이 『만국공법』이 번역되기 이전에도 많이 쓰였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가경(嘉慶) 25년 사청고(謝淸高)가 자신의 경험과 들은 바를 황병남(黃炳南)에게 받아쓰게 한 지리서인 『해록(海錄)』(1820), “서양의 기술을 배워 서양을 이기자(師夷長技以制夷)”고 주장한 위원(魏源)의 『해국도지(海國圖志)』(1843), 중국 이외의 인도문화, 아랍문화, 유럽문화 등의 존재를 알리고자 했던 서계여(徐繼畬)의 『영환지략(瀛環志略)』(1849), 「베이징조약」 체결 이후 불평등한 조약 내용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풍계분(馮桂芬)의 『교분려항의(校分廬抗議)』(1861) 등등이 있다. 그러한 책들을 보면, 19세기 초 중국에서 서방의 국제법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중국의 윤리와 도덕을 근본으로 삼고, 다른 나라의 부강의 방책으로 보충하자(以中國之倫常名教爲原本, 輔以諸國富強之術。)”는 주장을 한 풍계분이나 위원의 주장을 보면 아직은 중국적인 것을 포기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그 당시 소개되었던 국제법적 지식들도 여전히 파편적인 것에 불과했다. 그것은 청나라와 교류하는 국가와 그 상인들뿐만 아니라, 청나라 정부 자신에게도 참으로 불편한 일이었다. 주일본 부대사였던 장사계(張斯桂)의 『만국공법』 서문을 보면 『만국공법』을 번역한 목적을 짐작할 수 있다.

일찍이 천하의 형세를 살펴보면 중화(中華)는 최혜의 지역으로, 사해(四海)가 모두 있어, 만국이 내왕한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되었다. 그 밖의 다른 나라들은 춘추시절의 대국들과 같다. 잉글랜드, 프랑스, 러시아, 아메리카 네 나라는 강하기는 강하지만, 처음부터 강했던 것은 아니었다. …… 지구상의 판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고 작은 나라가 수십여 개국 안팎인데, 그들이 존속하려면, 그 선왕의 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관청에 보관하고, 대대로 지켜나가며, 오래도록 바꾸지 않아야 한다. 그 약속을 바꾸려면, 천지신령만이 없앨 수 있는데, 『만국율례』 이 책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서양 각국의 공사(公使), 대신, 육해군의 장성, 영사(領事), 통역, 교사, 상인, 그리고 세무사 등 모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는 것이다. 지금 아메리카 교사 마틴(丁韞良)이 이 책을 번역하였는데, 우리 중화가 그 정(情)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 주장에 따르기를 바란다. 우리 중화는 누구나 차별 없이 대하고(一視同仁), 사소한 말도 반드시 살펴왔으므로…… 그리고 이 책은 또한 크게 중화에 도움이 되니, 구비하여 변경의 일을 기획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따른다는 국제법을 중국만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만국공법』 출간 이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고, 그것은 중국인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전세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렸다. 바로 아편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아편전쟁에서 청나라는 철저히 패배하였다. 그 결과 중국으로서는 굴욕적인 조약을 연달아 맺게 되었다. 양무운동의 기수인 이홍장은 그것을 “수천 년 간 처음 있는 비상사태”(李鴻章 1997, 825)로 표현했고, 당시의 외교관이었던 증기택은 “오천 년이래 가장 큰 변화”(鍾叔河 2000, 278)라고 말했다. 장지동은 “과거에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기변”(費正清 1985, 186)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들의

표현을 보면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과 관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아편전쟁이 일어나기 전, 청나라는 거드름을 피울 수 있었다. 그들이 천하라고 부르는 세계 질서의 중심은 “중화질서”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였다. 모든 것의 중심은 그 이름이 의미하듯 중국이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 찾아온 서양 상인들은 본토에 맘대로 들어갈 수도 없었다. 청정부가 허용한 지역에서만 짐을 부릴 수 있었고, 청나라 관리를 거쳐서만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었다. 세상의 중심은 더 이상 중국이 아니었다. 세상의 중심은 어느 나라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만국공법』이다.

1862년 외국과의 사무를 담당하던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의 대신이었던 문상(文祥)이 북경 주재 미국 공사였던 벌링게임(Anson Burlingame)에게 서양에서 권위 있는 국제법 저서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마틴이 『만국공법』을 번역한다는 사실을 안 벌링게임은 마틴의 『만국공법』의 번역 초고를 당시 국제사무를 담당했던 총리각국사무아문에 소개하였다. 청 정부와 관리들이 국제법에 무지하였기 때문에 일 처리가 힘들었던 당시 상해(上海) 세관의 총세무사였던 하트(Robert Hart) 또한 마틴의 번역을 지지하였으며, 『만국공법』이 청 정부의 자금 지원을 통해 출판될 수 있도록 한 일등공신이 되었다. 사실 당시에 문상은 휘튼의 저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과거 하트가 『만국공법』의 일부를 번역해주었던 “24조”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흥미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만국공법』이 경사동문관(京師同文館)의 명의로 출판되게 되었다. 동문관은 아편전쟁 이후 청과 영국이 천진조약(天津條約, 1858)을 맺고 난 다음 세워진 기관이었다. 동문관은 외국으로부터의 공문서 등을 번역할 인재가 부족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청 정부가 설립한 것이었다. 그것은 서양 국가들의 법을 번역하는 번역 기관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이었다. 동문관의 학생들은 산수, 천문, 의학, 화학, 물리학 등 자연 과학뿐만 아니라, 법학, 경제학 등 사회 과학도 두루 배워 번역을 위한 기초 지식을 다졌다. 마틴은 동문관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동시에, 동문관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만국공법』을 번역했다. 마틴의 『만국공법』은 이렇게 중국적 입장에서 재탄생된 것이었다. 『만국공법』이 번역되자, 그 시대적 필요성과 물질·인적 도움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보급되었고, 특히 외국과 접촉할 수 있는 부문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었다. 그것은 곧 중국이 세계 질서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II. 『만국공법』을 통한 근대 세계 질서의 수용

앞서 얘기했듯이, 『만국공법』이 번역되기 이전에도 중국의 지식인 사회에 서양의

국제법에 대한 파편적 지식들은 어느 정도 전파되어 있었다. 그러나 비교적 체계적이면서도 자세하게 서양의 국제법에 대한 지식을 중국인에게 알려준 것은 『만국공법』이 처음이다. 『만국공법』은 모두 4권, 12장, 231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에서는 공법의 의미, 기원, 취지 등을 다루었고, 제2권에서는 자주권, 법 제정권 등의 국가의 자연권에 대해 썼다. 제3권은 국가들이 평상시 교류할 때의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제4권은 전시의 국제법에 대해 다루었다. 즉 국제법의 핵심적 내용들만 쏙쏙 뽑아 엮은 것이었다. 말하자면 오늘날 수능시험을 위한 족집게 과외 같은 셈이다.

휘튼의 원저에는 국제법 사례가 상당히 많은 반면, 『만국공법』은 그 중에서 중국에게 필요한 내용만을 발췌하여 최대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 것이어서 원저에 비해 내용이 훨씬 적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원저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양이다. 그 짧은 내용으로 서구의 국제법을 100퍼센트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 수 있지만, 중국인들에게 국제법 입문서로서는 충분한 정도였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내용이었다. 서양의 국제법이 중국적인 개념으로 번역되었지만, 중국인들에게는 생소한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국제 질서에 있어서는 주권, 조약, 국가 간의 평등, 중립 등이 그것이다. 그밖에 마틴은 권리, 책임, 법원, 국체, 자치, 선거, 영사 등과 같은 생소한 법률 개념들을 소개했다. 새로운 개념이므로,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국 고전의 개념과 단어들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적’ 해석이 가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개념들이 모두 새롭고 낯선 것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생소한 것은 ‘주권’이었다. 『만국공법』에서는 “주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리(上權)를 주권(主權)이라 한다. 이 최고의 권리는 안으로 행해지기도 하고, 밖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안으로 행해지면, 각국의 법도에 따라, 국민에게 맡겨지기도 하고, 군주에게 귀속되기도 한다. 이것을 논하는 것을 보통 “내공법(內公法, internal sovereignty)”이라 하지만, “국법”이라 하는 편이 낫다. 주권이 밖으로 행해지면, 본국이 자주적으로 하고, 타국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각국의 전쟁, 교제가 모두 이 권리에 의한다. 이것을 논하는 것을 보통 외공법(外公法, external sovereignty)”이라 하는데, 보통 말하는 “공법”이 이것이다(『만국공법』 1권 2장 5절)

주권은 “내공법”과 “외공법” 모두를 의미하지만, 후자는 전자와 달리 타국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성립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천하의 중심으로 군림하면서 위계적 세계질서의 정점에 위치하던 중국으로서는 전혀 새로운 질서를 의미했다. 서로 평등한 국가들 간의 상호 인정으로 이루어지는 국제 사회는 권리와 의무를 행사함에 있어서도 평등하다. 주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주권”으로, 『만국공법』은 휘튼의 원저에서 “Nations and Sovereign States”라는 제목의 장을 특별히 “자호(自護), 자주(自主)의 권리”로 번역하여 강조하였다. 열강의 침략으로 주권이 침해받고 있는 중국이 자국이 자주국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와 그 내용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것은 『만국공법』이 번역되기 이전에

임칙서(林則徐)가 바텔(Vattel)의 『국제법』 중 전쟁과 국가주권과 관련된 부분을 미국 전도사 피터 파커(Peter Parker)로 하여금 번역하도록 한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각국율례(各國律例)』라고 이름 붙여졌으며, 후에 『해국도지』 83장에도 실렸다.(王維儉 1985)

『만국공법』에서 ‘주권’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유는 생소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주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중국이 부당한 경험을 겪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주권을 갖는 자주국으로서 마땅히 누리는 권리 중 하나가 조약을 맺는 권리이다. 그러나 조약을 통해 오히려 자주권을 침해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반(半)자주국”이 되거나 “속국”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중국이 바로 그 경우에 해당되었다.

1843년 7월 공포된 중국과 영국이 맺은 “우커우 통상장정(五口通商章程)”(虎門附約)에는 “영국인의 범죄를 어떻게 따질 것인가는 영국이 정한 장정과 법률에 따라 영사관에서 처리한다. 중국인의 범죄를 어떻게 따질 것인가는 마땅히 중국의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王鐵崖 1957, 42) 당시에는 그에 대해 “액외권리(額外權利)”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황준헌(黃遵憲) 이후 치외법권(治外法權)이라고 표현하게 되었다.(費正清 1985, 223) 나중에 1877년 곽송도(郭嵩燾, 1818-1891)는 황제에게 외국의 치외법권을 폐지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오직 확연히 공평무사해야 하므로, 무릇 조계에서 분규가 생기면, 서양의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와 현의 지방에서 분규가 발생하면, 중국의 법에 따라 처리하고, 서양인을 중국의 백성처럼 생각하고, 서양인의 사건도 중국의 사건처럼 생각하고 처리해야 합니다.”(郭嵩燾 1983, 689)

그가 보기에 그런 문제들은 국제법에 따라 양국 모두에게 평등하게 해결되어야 했다. 그러나 우커우 통상장정은 중국에게 불리하게 체결되었다. 이에 대해 청 정부의 외교관인 증기택(曾紀澤) 또한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양 열강의 중국 내에서의 영사재판권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서양인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영사관이 서양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고, 지방관의 관할이 아닙니다. 서양인이 중국에서 저지른 범죄는 영사관이 처리하고, 중국인이 서양의 속지에서 저지른 범죄는 중국 관리의 관할이 아닙니다.”(曾紀澤 2002, 225)

이미 체결된 조약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만국공법』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1864년 프러시아와 덴마크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 발해만에서 양국이 충돌하였을 때, 혁흔(奕訢)은 『만국공법』의 내용을 운용하였다.(王維儉 1985) 이 사건으로 청 정부는 국제법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만국공법』의 내용들을 적용시키고 실현시키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때까지도 『만국공법』에서 분명하게 다루고 있는 해외주재 대사 또한 파견하지 않았다. 1865년 로버트 하트(Robert Hart)는 총리아문에 자신이 쓴 『국외방관론(居外旁

觀論)』을 건넸고, 1866년 토마스 웨이드(Thomas Francis Wade)는 자신이 쓴 『신의 약론(新議略論)』을 제출하여 해외 주재 사절을 파견할 것을 제의한 적이 있었다. 결국 나중에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야 겨우 파견하게 되었다. 그것이 1875년 영국의 탐사대로 파견되었던 영사관 서기 마가리가 중국인에게 살해된 마가리 사건(Incident of A. R. Margary)이었다. 그때 파견되었던 사절단이 영국에 남게 되어 중국 최초의 대사관이 수립되었다. 그때 청정부가 임명한 최초의 영국 대사가 바로 콕송도였다.

『만국공법』이 번역되고 초판 300권이 각 성에 보급되었다. 당시 『만국공법』에 대한 반발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던 것은 그 내용이 중국적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번역에 있어서 가장 주의 깊게 다뤄진 개념을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자연이다. 『만국공법』은 국제법을 “천연(天然)”의 “의로운 법(義法)”, “천명(天命)의 이치(理)”, 또는 “하늘의 법(天法)”으로 표현하였는데, 사실 그것은 서양의 자연법을 의미하기 위한 표현이었다. 『만국공법』을 번역한 마틴은 선교사였으므로, 국제법의 출발인 자연법을 하느님의 법으로 설명하고자 했으나, 중국인들에게는 기독교의 하느님 보다는 하늘(天)이 더욱 친근하였다. 이렇게 자연법은 하늘의 도(天道), 하늘의 이치(天理), 하늘의 명(天命), 하늘의 법(天法)으로 표현되었다.

둘째, 조화이다. 『만국공법』은 국제 질서를 조화로운 사회라고 이해했다. 그것은 『상서』에 나오는 “모든 나라가 화합한다(協和萬邦)”는 얘기나, “먼 나라 사람이 오면 품고 어루만진다(懷柔遠人)”는 내용이나, “누구나 어진 마음으로 대한다(一視同仁)”는 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유교사상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불가나 묵가의 사상과도 잘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중국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조약을 “화약(和約)”이라고 번역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이 좋게 잘 지내자는 약속이 바로 조약인 것이다.

셋째는 공리(公理)이다. 『만국공법』 1권 1장 1절에는 여러 나라들에게 “공법”이란 것이 있어서 그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소송을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공법이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와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로 이해된 것이다.(王中江 2014) 무술년에 유신변법운동을 했던 담사동은 그것을 재미있게 표현했다. 그는 공리를 동해, 서해, 남해, 북해 어느 바다에 풀어놓아도 맞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만국공법은 어느 나라에도 맞는 것이라는 의미이다.(譚嗣同 1981, 264) 모두에게 맞는 것, 다시 말하자면 보편성을 갖는다는 것은, 중국인들에게 정(情), 의(義), 예(禮) 등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질서로 여겨졌다. 춘추전국시대에도 국가 간의 교류에서 정과 예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중국인들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인 것이다. 그런데 근대 중국인들이 살고 있던 당시의 국제사회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운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었을까?

그들은 그것을 예악이 붕괴된 춘추전국시대의 모습과 오버랩하여 이해했다. 춘추시대에 예악의 중심으로서 주나라가 있었듯이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작용한 것이다. 현실적인 힘, 군사력, 경제력 등의 하드파워는 어쩔 수 없지만, 도덕, 문화, 사상 등 소프트파워는 아직도 중국이 우세하다는 생각인 것이다. 아편전쟁 이후

치욕스러운 불평등조약이라고 알려진 「남경조약」(1842)을 맺었을 때만해도 서양의 국제법에 대해 무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만국공법』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법 서적이 번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국제 질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은 중국이 천조상국으로 중심에 위치하는 중화 질서관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Ⅲ. 천조상국의 화이지변

1. 천조상국과 조공

근대 서구의 국제법 질서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중화 세계질서의 원리에 의해 주변 국가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것은 위계적 성격을 띠었으며, 상국(上國)과 속번(屬藩) 국가들 간의 종번(宗藩) 관계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다. 천하는 중심과 주변으로 나뉘었고, 양자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화(華)와 이(夷)로 위계적 관계였다. 중국은 지리적 중심일 뿐만 아니라, 근대에 이르기까지 문명 자체를 대표하는 문화적 중심이기도 했다. 그리고 중심과 주변은 ‘조공’이라는 형식을 매개로 정치적 관계를 형성했다. 그렇듯 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중심의 위치를 차지한 질서가 바로 천조상국의 세계질서관(戴逸 1999, 53)이다.

그러한 세계관은 “천하=중심+주변=화(華)+이(夷)=왕기(王畿)+속번(屬藩)=중국+왕국들=황제+국왕=중화세계제국=중앙정부+지방정부”(張啟雄 2007)의 구도를 띠고 있었다. 사실 세계(天下)는 하나의 국가의 연장인 셈이었다. 중국은 중국이, 주변은 주변이 다스린다는 화이분치(華夷分治)이념에 기초하여 황제의 직접 통치 영역인 중국에는 군현을 설치하여 통치하고, 그 나머지는 번국으로 봉하여 “다스리지 않으면서 다스리는(以不治治之論)” 간접 통치를 실시하였다.(張啟雄 2002, 114)

속번의 통치를 담당하던 기관은 예부(禮部) 또는 이번원(理藩院)이 맡아하였는데, 황제는 이들 기관을 통해 책봉과 조공체제를 실시하였으며,³⁾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외교관계를 맺었다. 예부가 외교 업무를 담당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문화적’, ‘윤리적’ 성격이 강조되었다. ‘중국(華)’과 ‘주변(夷)’은 문화적이며 윤리적인 우열로 구분되었고, 그것이 지배가 정당화되는 근거가 되었다. 그것은 영미 기독교 문명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질서와 구별되는 중화 유가 문명을 중심으로

3) 『청회전사례(淸會典事例)·예부·조공』에 의하면, 예부가 담당하는 업무에는 책봉(敕封), 조공 시기, 조공의 방법, 조공 물품, 조공의 규모, 조건의 법도(朝儀), 하사(賜予), 사신의 송영(迎送), 금지사항(禁令), 구휼(周恤), 구제(拯救), 수행원, 숙소, 수행 상인들의 권리와 무역의 규모 등등 조공과 관련된 구체적 업무가 모두 포함되었다. 조공은 적게 받게 많이 주는 원칙에 따랐기 때문에, 조공의 의무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이 조공국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청이 조공국에게 인정한 조공 횟수가 곧 친밀도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미얀마가 10년에 한 번 조공을 하던 것과 달리, 조선은 1년에 한 번 조공을 한 것은 조선에 대한 대우가 더 높았음을 의미한다.(張小林 2005), http://jds.cass.cn/xrfc/xrsb/201605/t20160506_3327807.shtml(최종검색일: 2020년 4월 22일)

하는 동방 국제 질서(張啟雄 2007)라고 할 수 있다.

속변 국가들은 상국인 중국에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쳤다. 그것은 불평등하며 위계적인 중국 내 정치질서와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다. 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적 질서, 즉 예(禮)라는 문화적 보편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지배의 형식과 내용 모두에 있어서 중심을 닮은 주변은 중국과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현대에 들어와서 조공관계에서 이루어졌던 평화와 협력의 관계가 관심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한 관계는 현대 국제 질서에서의 평등한 국제 관계와는 확연히 다르다. 나와 구별되는 ‘타자’의 존재는 문화적으로 저급하여 동일한 인간 부류로 볼 수 없는 야만인으로 분류된다. 중국 내에서 수많은 왕조가 교체되었지만, 근대에 들어서기 전까지 중국은 주변국에 대해 중심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중심으로서의 위치가 공고해지면서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여기는 ‘화하(華夏)중심주의’를 초래했다.

2. 화이지변

“중국이 서울이고, 사방은 제하(諸夏)”⁴⁾(『毛傳』)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그 주변의 제후국들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 중심에 있었다. 그때의 ‘중국’은 주(周) 왕조의 수도를 의미했다. 제후국들은 분봉(分封)제도에 의해 수립되었으며, 주 왕실은 그들의 공동의 통치자(共主)였다. 제후국들은 주 왕실에 대해 조공을 바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춘추전국시대를 거치며 ‘중국’은 제후국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그와 함께 천자와 제후 사이에 이루어지던 책봉(冊封)과 조공제도는 중국과 주변국으로 확대되었다. 청나라의 외교관이었던 박송도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중국이 그 범위를 점차 제후국을 넘어서까지 확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삼대(三代)가 성하였을 때, 성인의 정치와 교육이 중국의 한 구석에만 미쳤을 뿐이어서, 호남, 강소, 절강 일대가 모두 남쪽 오랑캐(蠻)과 동쪽 오랑캐(夷)였다. 한나라 때에야 남으로는 교趾(交趾, 지금의 베트남 북부)까지, 동으로는 낙랑(樂浪)까지 이르렀는데 모두 군현으로 삼았으나, 흉노(匈奴), 오환(烏桓), 서강(西羌)이 서쪽 오랑캐(戎)과 북쪽 오랑캐(狄)였다. 원나라 때부터 지금의 왕조에 이르러, 흉노, 서강의 땅이 모두 나라에 종속되었고, 조선과 안남 또한 속국이 되었다.”(郭嵩燾 1892)

이렇게 중국의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은 곧 중국 내의 민족을 의미하는 화(華)의 확대를 의미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영토의 확대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중국적 정치와 문화를 수용한 질서 내로의 포섭을 의미하였다. 그렇지 못한 영역은 모두 이(夷)에 해당했다. “중국이 있으면 반드시 이적이 있다(有中國必有夷狄)”(陳亮 1974, 47-48)는 남송(南宋)의 사상가 진량(陳亮, 1143-1194)의 말처럼, 구체적인 내

4) 中國，京師也，四方，諸夏也。

용은 다르지만, 언제나 화이의 구별은 존재했다. 그리고 중국 이외의 국가들을 ‘이(夷)’로 공식적으로도 표현하였으며, 그것은 아편전쟁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청 정부는 영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영국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夷’자를 고집했지만, 결국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각종 공문에서 영국인을 언급할 때 ‘夷’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텐진 조약(天津條約)(1858) 51조에 넣었다.⁵⁾

그러므로 아편전쟁 이후 ‘양무(洋務)’라는 이름으로 바뀔 때까지 외국과의 사무를 ‘이무(夷務)’라고 불렀다. ‘이무’라는 개념 자체는 중성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아직 자국의 제도적·문화적 틀 속에 들어오지 못한 민족과 국가에 대한 멸시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런 감정은 춘추전국 시대 이후 주변 국가와의 잦은 전쟁으로 더욱 강화되었고, 진한(秦漢) 이후 통일 국가를 완성하고 점차 영토를 확장함에 따라 자민족에 대한 자신감과 우월감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중국 역사를 통틀어 보면, 중화민족의 뿌리라고 여겨지는 화하족이 중국을 다스리던 기간보다 이민족에 의해 침략을 받아 통치되었던 기간이 더 길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것은 일종의 자기 위로이며 자기 최면일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이민족에 대해 포용적 태도를 보였던 고대보다 근대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배타적 태도가 강화되었다. 그 배타성은 아편전쟁으로 인해 더욱 심해졌다. 그런 상황에서 『만국공법』에 의해 소개된 세계 질서는 힘의 열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일종의 강제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랜 역사 동안 이민족과의 갈등을 통해 형성되었던 화이지변의 문화에 대한 우월감과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 그리고 그에서 비롯된 정체성은 쉽게 포기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이중적 감정과 정서는 『만국공법』의 번역 개념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만국공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 중 “반주(半主, semi-sovereign)”, “성부(省部)”, “속부(屬部)” 등은 중국의 “속방(屬邦)”, “번속(藩屬)”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는데, 영어의 식민지(colony)를 많은 곳에서 “속방”, “번속”의 개념으로 번역하였다.(李動旭 2018, 168-192) 이렇듯 『만국공법』의 번역어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세계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천하” 질서 속에서 이해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적당한 번역어를 찾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개념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 자신들이 사용해오던 개념들과는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집했다는 것을 보면, 서구의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적 필요성과 강제성과 더불어, 중화질서와 근대 세계 질서의 화해가 결코 쉬울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춘추질서와 근대 국제질서의 결합

『만국공법』은 중국이 세계 속의 여러 나라 중의 한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고, 근대 세계의 주역인 서양 국가들의 국제법과 그것을 통해 만들어진 국제질서를 받아들여야

5) 嗣後各式公文，無論京外，內敘大英國官民，自不得提書‘夷’字。

한다는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이, 특히 기존의 질서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고, 그래서 더욱 더 기존의 질서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관료 계층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현대와 서양으로 상징되는 근대 국제 사회로 가야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다고 곧장 투항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중국적 사고의 원형을 제공한 ‘춘추’ 질서로 포장되었다. 그렇다고 그것이 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국공법』의 번역이나, 그리고 그것을 본 관리들의 인식이 그렇게 정당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곧 ‘춘추’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은 당연히 아니었지만, 춘추시대와 유사한 그 어떤 질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었다.

그 옛날 중화문명을 탄생시켰던 춘추시대에도 주 왕조를 중심으로 여러 제후국들이 서로 갈등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가졌다. 그때에는 주나라라는 구심이 있었고, 주의 천자가 권력의 중심이었으며, 그가 만든 예법에 따라 모든 나라가 다스려졌다. 주나라의 권위가 쇠약해지면서, 그만 그만한 제후국들끼리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던 시대가 바로 전국시대이다. 청의 지식인들에게 『만국공법』은 전국시대의 혼란이 오기 전에 춘추시대를 지탱했던 예약질서, 그것으로 비쳐진 것입니다. 새로운 춘추시대에는 예법대신 국제법, 중국어로 만국공법이 세계 질서를 지탱하는 것으로 말이다.

그것은 국제법을 만국공법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함으로써 더욱 분명해진다. 중국에게 국제법은 하나의 천리(天理)로서, 인간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준칙으로 여겨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공”이라는 단어를 차용함으로써 더욱 강조된다. 중국의 전통사회에서 ‘공’은 ‘사(私)’와 대비되는 개념을 사용되었다. ‘사’를 지향한다는 것은 서양의 개인으로 이해되지 않았고,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여 결국은 공적 이익에 해가 된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 만큼 국가들의 사회인 국제사회에 적용되는 법과 질서에 전통적 개념인 ‘공’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중국적 도덕관념이 『만국공법』 해석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公이 중국인들에게 주는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정관응과 증기택의 표현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성세위언(盛世危言)』이라는 글로도 유명하고, 2002년 탄생 160주년을 맞아 마카오에서 우표로 만들어지기도 한 정관응(鄭觀應)은 「논공법(論公法)」이라는 글에서 『만국공법』에서 ‘공’을 쓴 이유를 만국공법이 한 나라의 사(私)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리의(理義)를 기준으로 삼고, “하늘의 정과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청 말의 저명한 외교관이었던 증기택(曾紀澤)은 어땠을까? 그는 국제법 즉 공법을 “정리(情理)”라는 두 글자로 표현하였다. 공법에 따라 행하면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면 이치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제법을 이렇게 ‘만국공법’이라고 받아들였지만, 그것은 사실 이상에 불과했다. 정관응은 세계 곳곳에서 패권을 다투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지구 둘레 9만 리 중에서, 그 수레와 말이 밟고 지나가지 않은 곳이 없다!”(鄭觀應 1982, 176)라고 표현하였다. 그런데 그런 현실이 더욱 더 춘추전국시대를 떠올리도록 했다. 춘추전

국시대에도 제후국들끼리의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맹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들
판에 준비한 시체가 있다고 표현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추
오패가 각축을 벌이던 시대에도 공법은 존재했으며, 그것이 전해진 것이 당시 국제사
회에서 통용되던 국제법과 일맥상통한다고 이해하였다. 청 말의 학자 진치(陳熾)는 중
국 역사를 보면 천하 모든 나라들이 여럿이 소수를 괴롭히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
를,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괴롭혀왔으나, 그래도 그 괴롭힘이 그리 심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공법 때문이라고 본 것은 바로 그런 생각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중국인들의 과거에 대한 미련은 오랫동안 계속되던 중화질서 때문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런데 국제법을 공법으로 이해하고, 국제질서를 춘추질서로 이해하면서 서양의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받아들인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중화질서로부터
근대의 국제질서로의 전환이 얼마나 큰 변화였는지, 그리고 왜 중국인들이 국제법
을 도덕적으로 이해했는지는, 중국의 전통적 외교정책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중
국의 전통문화는 예(禮)를 중심으로 발달했고, 그것은 대외관계에까지 적용되었다.

전통적 중화질서는 ‘천하’를 범위로 하지만, 그 중심은 언제나 중국이 차지했다. 그
리고 중국과 그 주변국은 예(禮)를 바탕으로 위계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중국전문가
페어뱅크는 그런 이유를 들어 중화질서가 국제질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근대 이
후의 국제질서는 실질은 어떠하든, 명목으로는 국가 간의 평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중화질서는 다르다. 현대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중심에 위치한 중국은 하
드파워 면에서는 아닐지 모르지만, 소프트파워 면에서는 우위에 있다고 자부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중국은 문화적 자부심을 토대로 자신들이 우월한 문화를 주변국들에
게 전수한다고 여겼다. 동양사회에서는 글이나 사상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부모처럼
우대하는 문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주변국의 스승이나 부모 같은 대접을 받
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인들은 외교를 잘 해야 국가를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
다. 프랑스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이홍장 휘하에서 일했던 마건충(馬建忠)은 국가
간의 교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점을 느꼈다.⁶⁾ 정관응은 한 발 더 나아간 주장을
했다. 이제 중국이 천조국이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스스로를 만국의 하나로 여겨
야”(『易言·公法』)한다고 얘기했다.

IV. 중화질서에서 벗어난 국제법의 적용과 실천

『만국공법』에는 근대 국제법의 창시자 그로티우스(Hugo Grotius)가 자주 언급되었
다. 특히 그로티우스와 그 문하에 의해 국제법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는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첫 번째 갈래는 『만국공법』에서 “성법(性法)”으로 표현한 자연법이다.

6) 馬建忠, 『適可齋紀言記行』卷三, pp.13-14; 蓋天下事眾擎則易舉,孤掌則難鳴,理之常也。夫同宅寰中,此
疆彼界,而建爲國,則必小事大,大字小,憂危與共,戰守相援,而勢乃不孤。故英得法助,奏績於黑海之濱。……
自均勢之局定,而列國安危所系,莫大於邦交。

두 번째 갈래는 그 자연법에 근거한 각국의 교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제법이다. 그것은 근대 국제법이 '성(性)'에 토대를 두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의 주류 사상인 유가의 입장에서 인간은 누구나 '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서양 국제법의 기원에 대한 긍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거리가 있는 법이다.

유가적 성선설을 반영하여 맺은 영국과의 조약으로 중국은 그런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 「우커우 통상장정(五口通商章程)」에서 중국은 다음과 같이 영국에게 최혜국대우를 인정하였다. “장차 황제가 각국에 새롭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였으며, 또한 영국인 모두 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여, 공평 타당함을 보이하고자 한다.”⁷⁾ 그러나 서양 각국이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영국과 같은 최혜국 특권을 요구하고 보장받음에 따라 중국은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에 증기택은 국가의 이익에 있어서 모든 나라가 혜택을 본다는 것은 서양의 공법에 어긋나므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曾紀澤 1981, 77) 설복성(薛福成)은 것처럼 중국만이 공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분개했다.

“서양인들은 언제나 중국이 공법 이외의 국가라고 말하며, 공법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각국의 통상 항구에 중국만 영사관을 세우지 못하도록 한다. 중국에 와 있는 그들의 영사는 상인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권리는 지방관과 동일하다. 서양인이 중국인을 죽이면, 한 명도 법률에 따라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최근 미국은 중국인을 쫓아내고 금지하였으며, 중국을 우방국으로 거의 여기지 않는다. 대개 서양인은 우리가 공법을 가지고 그들과 다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다투고 싶어도, 모든 나라가 무시하고, 공론으로 삼지 않는다. 거리낌 없이 악행을 저질러 우리를 능욕하는 경우, 비록 그것이 도리에 어긋났다 하더라도 돌봐주지 않는다.”(薛福成 1987, 414)

과거 매카트니가 건륭제에게 요구했던 사항과 마찬가지로, 영국은 중국이 국제법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불공평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그것은 비엔나체제 이후 성립된 유럽의 국제법과 국제질서와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불공평한 조약 체제(the unequal treaty system)”가 성립되었다.(John K. Fairbank 1957, 163-213) 중국이 국제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중국의 국력이 유럽 국가들보다 약한 것이 가장 주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근대 국제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도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큰 교훈을 얻은 이후에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성과를 얻기도 했다. 광둥도는 영국 외교부에 영국이 신장 카슈가르(Kashgar)에 외교사절을 파견하여 주재하게 한 사건에 대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항의하였다.(1877년) 그는 그 사건을 영국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다. 수개월 후에 청 정부는 카슈가르를 수복할 수 있었다.(汪榮根 2000, 97) 그것은 광둥도가 특히 『만국공법』에 관심을 가지고 마틴과 교류하고, 직접 유럽의 국제법 회의에 참석하는 등(張建華

7) <http://www.qulishi.com/huati/humentiaoyue/> (검색일: 2020.03.13.) 將來大皇帝有新恩施及各國，亦應准英人一體均沾，用示平允。

2003, 280-295) 적극적으로 국제법을 배우고자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후 혁광(奕劻)과 리홍장(李鴻章)이 청 정부의 대표로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11개국 대표와 맺은 「신축조약(辛醜條約)」(北京議定書라고도 불림. 1901年9月7日)이라는 불평등조약을 맺을 때까지도 중국은 줄곧 서양 국가들과의 주권의 평등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했다. 신축조약을 계기로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하락하였다. 그러한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 정부가 안으로는 유럽화 개혁을 추진하고, 밖으로는 국제화에 순응하면서 국제공약(國際公約, International Convention)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상대적으로 평등한 조약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국제 공약이 다자간 조약이었기 때문에 중국에만 불리하게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상황이 그런 만큼, 공법이란 힘이 대등한 국가들 사이에서나 기능할 뿐, 힘이 약한 나라에게는 믿을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되었다.(周子亞 1981, 56, 5)

사실 “국제법이 중국에서 처음 응용된 목적은 임칙서(林則徐)를 도와 영국인과의 교류에서 강경한 태도를 표현하기 위한 것”(Hsu 1960, 125)이었다. 중국을 천조라고 칭하고, 외국 상인을 ‘오랑캐상인(夷商)’이라고 부르는 등(林則徐 1991, 136)⁸⁾ 임칙서의 위계적인 태도는 중국이 여전히 중국 중심적 사고와 천조상국의 화이지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 “지금 중국 외에도 나라가 즐비하다. 법으로 묶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나라이겠는가?”(丁韞良 2003, 9)라는 장사계의 말처럼 그것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선택이 되었다. 그것을 수용하면서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익숙한 도덕적 개념을 통해 번역하여 정의와 공리를 반영하는 것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김현주 2019, 121-146)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청 정부의 관리들이 순진하게 서양의 속임수에 놀아난 것도 아니었다. 중화 질서와 서구의 세계 질서는 전통과 현대의 충돌, 동양과 서양의 충돌, 도덕과 힘의 충돌에서 전자가 패배한 결과였다.

서구 사회에서 근대 민족국가가 탄생하였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가 확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빈번한 갈등과 충돌이 전쟁의 형식으로 나타났고, 그것의 종결이 조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제국의 탄생을 막기 위해, 유럽에서는 세력균형을 위한 평등한 국가주권 개념이 확립되었다. 그것은 자유주의가 국제적으로 적용된 것이었지만, 국제사회는 아직은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기 이전의 사회의 형태에 머물러 있었다. 공통된 규범이 적용되는 범위의 확장은 서구 사회에서 동양 사회로까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중국이 향유하던 중심의 지위는 주변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중국이 야만과 문명을 가르던 기준이었던 예(禮)는 이제 국제법(萬國公法)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그런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중국은 여전히 과거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만큼 깨어나기 위해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8) 我天朝君臨萬國，盡有不測神威，然不忍不教而誅，故特明宣定例。該國夷商欲圖長久貿易，必當懷遵憲典，將永斷來源，切勿以身試法。王其誥奸除惡，以保刈爾有邦，益昭恭順之忱，共享太平之福，幸甚，幸甚！

V. 중화 질서와 근대 세계 질서의 충돌

청 정부가 근대적 국제법 관념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른 나라의 사절에 대해 조공을 바치러 오는 것(入貢之舉)으로 이해했다. 그러므로 외국 사절을 ‘공사(貢使)’로, 그들이 가지고 온 국서를 (공물의) ‘목록(表)’이라고 표현했다. 그런 이유로 처음에는 중국과 서양 국가 사절 사이에는 접견의 예(覲見之禮)를 가지고 논쟁이 계속되었던 것이다.(費正淸 1985, 98-99)

그러나 일부 인사들은 현실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광송도는 중국만이 유일한 문명국가가 아니라, 유태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인도 등도 모두 수천 년 또는 수만 년이 된 국가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鍾叔河 2000, 265)

서양에서 정치와 종교가 공명정대한 나라를 시빌라이즈드(civilized, 문명적인)라고 말하고,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모두 그렇다. 그 나머지 중국, 터키, 페르시아를 하프 시빌라이즈드(half-civilized, 반개화적)라고 한다. 아프리카의 이슬람국가들은 바바리안(야만적)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이적(夷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양은 그들을 교화되지 않았다고 한다. 삼대이전, 중국만이 교화되었고, 그러므로 “요복(要服)”, “황복(荒服)”의 이름이 있었고, 중국에서 멀리 있는 나라는 모두 “이적”이었다. 한나라 이래, 중국의 교화가 나날이 쇠약해졌다. 정교와 풍속은 유럽 각국에서만 홀로 성했다. 그들이 보기에 중국은 삼대의 이적과 같다. 중국 사대부 중에 이런 것을 아는 자가 아직 없으니, 슬프다!(郭嵩燾 1983a, 426)

그러나 광송도와 같은 이는 소수에 불과했다. 광송도가 슬퍼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만국공법』은 세계에 중국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구 전체의 모습을 동반구와 서반구로 나누어 실었다. 세계는 둥글고, 그 중에는 많은 국가들이 있으며, 중국은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중국에 세계전도가 들어온 것은 『만국공법』이 번역되기 200년도 전인 명나라 만력(萬曆)12년인 1584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⁹⁾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에 더하여 서양 국가들이 리(理), 의(義) 등 중국인들이 보편 원칙으로 여기는 개념들에 입각하여 만든 국제 규범들을 열거하였다. 그것은 세계가 둥글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것이었다.

그것은 서양이 야만이었던 시절에서 벗어나 개화(開化)되고 계몽(啓蒙)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리(理)나 의(義)라고 말할 수 있는 도덕적 원칙은 장소, 시간, 대상을 막론하고 통용되는 법이므로, 중국과 문화는 다르지만, 서양 또한 중국이 예(禮)라고 불려왔던 규범에 상응하는 유사한 제도와 질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분명

9) 명나라 만력12년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리치(1552-1610)가 제작한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가 중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세계지도이다. 지금은 남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마테오리치는 「곤여만국전도」 이전에 「여지산해전도」라는 세계지도를 만들었다고 하지만.(김혜경 2017)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히 한 셈이었다. 그들은 그러한 예에 따라 사절을 주고받고, 전쟁과 화해를 하고, 대내외적 사무를 수행하였다. 그렇게 시대는 달라졌고, 과거의 오랑개는 더 이상 낙후되어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강력한 대포와 군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만든 세계 질서와 규칙에 중국 또한 따라야 하는 때가 온 것이다.

그러나 갑오전쟁(甲午戰爭)(1894) 이후 일본에게 패배하고 굴욕적인 마관조약(馬關條約, 시모노세키조약)(1895)을 체결하면서 느낀 중국인들의 치욕감을 보면, 당시까지도 중국인들은 근대적 국제 질서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구 국제법의 보편적 원칙에 의하면, 일본이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해도, 근대 국제 질서에 의하면 국제 사회의 평등한 일원이고, 국제 사회에서 영토나 인구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이 일본에게 느낀 수치는 영토나 인구가 작은 나라에게 졌다는 굴욕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침략한 유럽의 국가들도 크거나 인구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것은 강유위나 청말 지식인들이 유럽 국가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국의 속방이라고 여겼던 일본에 대해 느꼈던 정신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일통(一統)적 천하에서 하나의 몸체로 여겼던 속방에 대한 상실감 때문이었다.

중국은 고대부터 줄곧 일직선의 대내적 통치 구조를 형성해왔고, 대외적으로 일직선적 사고를 통해 세계를 인식해왔다.(柳嶽武 2009, 10)¹⁰⁾ 하늘, 천자, 중국, 번국, 속국의 순으로 위로부터 아래로의 질서를 형성해 온 세월이 수천 년이었다. 이성적으로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감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도 어찌면 당연하다. 『만국공법』을 번역하고 외국과의 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관리들에게 그것을 배포하면서 적극적으로 근대 국제 질서와 규범을 배우도록 했지만, 그것은 서양 문화와 사상에 대한 자발적 굴복 내지 수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힘의 현실적 논리에서 패배를 당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만큼(심리적) 저항은 그만큼 강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 동안 중국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일통(一統)의 천하관에서 모두가 평등한 국가로 이루어진 분산된 근대 세계관으로의 전환은 세계관의 전환인 만큼 모든 것이 낯설고, 거부감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

서로 다른 질서 또는 문명의 충돌은 결국은 강요된 화해를 동반하지만, 수용해야만 하는 쪽에서의 강한 저항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국이 처한 상황과 시대적 조류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직감했던 청 말의 일부 지식인들과 정부 관료들은 새로운 질서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취하였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질서 간의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러한 일부의 선진적 자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역사문제, 위안부문제, 이데올로기문제, 종교문제 등 통약 불가능한 주제들을 중

10) 中國古代社會裏，不僅統治政權是單級的，整個統治結構也是單級的。而且在單級的思想體系的引導下，中國人對世界的認識也是單級的，就古代中國的世界秩序而言，它就是單級的，最頂層是天，天下爲天子，天子之下是中國，中國周圍是屬國。所以整個東亞古代的秩序是一個強調‘一’的秩序，其中‘一統天下’就是這種秩序的終極目標。

심으로 지역 또는 세계 협력을 저해하는 마찰과 갈등의 문제에 대해 시사점을 던져준다. 오늘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중심으로 지역적 차원 및 세계적 차원에서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으며, 특히 이데올로기 및 문명 충돌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대의 『만국공법』의 번역에서 나타난 화해의 시도는 만약 화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화해의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만국공법』이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보편적 국제원칙이 어느 정도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중화 질서를 고수하고 싶었던 중국인들도 『만국공법』 속에서의 국제질서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사상적 향수를 느끼는 춘추질서와 유사하다고 느낄 정도로 공적 질서를 제시해주는 것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점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세계는 갈등과 모순 속에서 화해의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 베이징 컨센서스와 워싱턴 컨센서스와 같은 세계적 차원의 갈등은 물론이고, 국내에서의 여성과 남성, 노인과 청년, 고용주와 피고용주, 등등 다양한 국가적 차원의 갈등까지, 모든 갈등의 해결을 위한 출발은 그 대안의 공공성에 있다. 소수 사람들에게만, 일부 지역에게만, 어느 나라에게만 혜택이 가는 정책 및 대안은 저항을 불러 올 수밖에 없다. 최소한 그 대안으로 제시된 용어나 개념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만국공법』이 “공법”으로 번역되어 중국인들에게 받아들여진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아와 같이 정치에서마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특히 그렇다. 아시아인들은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등 정치가들의 정치적 업적과 업무 수행 능력보다 그들의 도덕성을 더욱 중시한다. 그런 성향은 국제 관계나 외교에도 반영된다. 타 국가에 대한 민족적 정서가 과도하게 분출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런 도덕성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공공성과 도덕성을 담보로 하지 못한 어떠한 조약과 협정도 실패하기 마련이고, 그것은 종종 민족적 갈등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장차 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화해를 위해서는 그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그것이 『만국공법』의 번역과 수용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다.

참고문헌

- 康有爲. “上清帝第三書.” 『康有爲政論集』上冊. 上海: 中華書局, 1981.
- 郭嵩燾. 『養知書屋遺集』卷一一「複姚彥嘉」, 光緒壬辰(1892)刊本.
- 郭嵩燾. 『倫敦和巴黎日記』. 湖南: 人民出版社, 1983.
- 郭嵩燾. 『郭嵩燾日記(第三卷)』. 湖南: 人民出版社, 1983a.
- 김현주. “중화질서의 해체와 그에 대한 청 정부의 대응: 만국공법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vol. no.1, 2019.
- 김혜경.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에 대한 선교신학적 고찰.” 『신학전망』 198. 2017.
- 戴逸. 『18世紀的中國與世界·導言卷』. 遼寧: 遼海出版社, 1999.
- 費正清. 『劍橋中國晚清史(下卷)』.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 薛福成. 丁鳳麟主編. 『薛福成選集』. 上海: 人民出版社, 1987.
- Hsu. China's Entrance into the Family of Nations: The Diplomatic Phase 1858 - 1880.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 約瑟夫·塞比斯. 『耶穌會士徐日升關於中俄年布楚談判的日記』. 北京: 商務印書館, 1973.
- 汪榮根. 『走向世界的挫折』. 湖南: 嶽麓書社, 2000.
- 王維儉. “普丹大沽口船舶事件和西方國際法傳入中國”. 『學術研究』. 1985(05).
- 王維儉. “林則徐翻譯西方國際法著作考略.” 中山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85.
- 王鐵崖. 『中外舊約章彙編(第一冊)』. 北京: 三聯書店, 1957.
- 柳嶽武. 『傳統與變遷: 康雍乾之清廷與藩部屬國關係研究』. 四川: 巴蜀書社, 2009.
- 李動旭. “國際法翻譯中的“藩屬”觀念與晚清藩屬觀念的衍化.” 『近代史學刊』. 2018(02).
- 尹新華. “國際公約與清末新政時期的中外關係.” 『求索』. 湖南省社會科學院, 2011年第12期.
- 林則徐. 『林文忠公政書』. 北京: 中國書店, 1991.
- 張建華. “郭嵩燾與萬國公法會.” 『近代史研究』. 2003年第1期.
- 張啟雄. “東西國際秩序原理的沖突.” 『曆史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院, 2007.
- 張啟雄. “東方型國際秩序原理之型模建構與分析.” 『戰後東北亞國際關係』. 台北: 中央研究院亞太研究計畫, 2002.
- 張誠. 『張誠日記』. 北京: 商務印書館, 1973.
- John K. Fairbank. “The creation of the treaty system.” *Chinese Thought and Institution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57.
- 丁韋良(W. A. D. Martin). 何勤華. 『萬國公法』. 北京: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3.
- 鍾叔河. 『從東方到西方』. 湖南: 嶽麓書社, 2000.
- 周子亞. 『国外法学知识译丛: 国际公法』. 北京: 知识出版社, 1981.
- 曾紀澤. 『使西日記』. 湖南: 人民出版社, 1981.

曾紀澤.『出使英法俄國日記』. 湖南：嶽麓書社，2002.

陳亮.“問答下.”『陳亮集』卷四. 北京：中華書局，1974.

<http://www.qulishi.com/huati/humentiaoyue/> (검색일: 2020.03.13.)

서양사정 (2021)

김현 (연세대) · 송경호 (연세대)



202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추계학술회의

『서양사정』과 서구 개념의 번역과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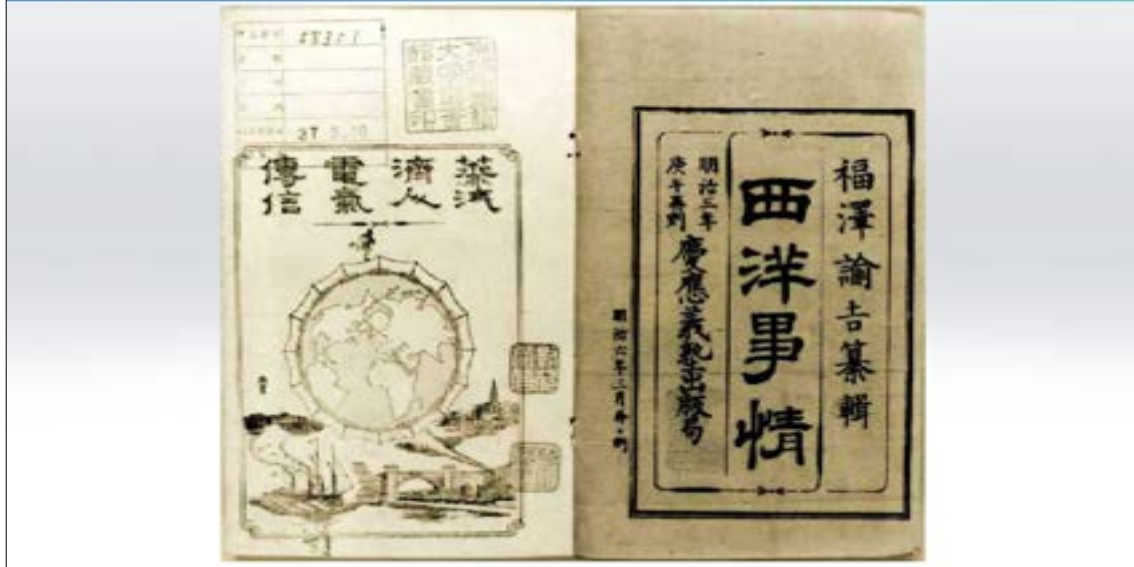
김현, 송경호
(연세대학교)

PART I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 - 1901)



『서양사정(西洋事情)』 - 초판 1866년, 외판 1867년, 2판 1870년



초판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제6권 제7권 제8권 제9권 제10권 제11권 제12권 제13권 제14권 제15권 제16권 제17권 제18권 제19권 제20권 제21권 제22권 제23권 제24권 제25권 제26권 제27권 제28권 제29권 제30권 제31권 제32권 제33권 제34권 제35권 제36권 제37권 제38권 제39권 제40권 제41권 제42권 제43권 제44권 제45권 제46권 제47권 제48권 제49권 제50권 제51권 제52권 제53권 제54권 제55권 제56권 제57권 제58권 제59권 제60권 제61권 제62권 제63권 제64권 제65권 제66권 제67권 제68권 제69권 제70권 제71권 제72권 제73권 제74권 제75권 제76권 제77권 제78권 제79권 제80권 제81권 제82권 제83권 제84권 제85권 제86권 제87권 제88권 제89권 제90권 제91권 제92권 제93권 제94권 제95권 제96권 제97권 제98권 제99권 제100권	외판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제6권 제7권 제8권 제9권 제10권 제11권 제12권 제13권 제14권 제15권 제16권 제17권 제18권 제19권 제20권 제21권 제22권 제23권 제24권 제25권 제26권 제27권 제28권 제29권 제30권 제31권 제32권 제33권 제34권 제35권 제36권 제37권 제38권 제39권 제40권 제41권 제42권 제43권 제44권 제45권 제46권 제47권 제48권 제49권 제50권 제51권 제52권 제53권 제54권 제55권 제56권 제57권 제58권 제59권 제60권 제61권 제62권 제63권 제64권 제65권 제66권 제67권 제68권 제69권 제70권 제71권 제72권 제73권 제74권 제75권 제76권 제77권 제78권 제79권 제80권 제81권 제82권 제83권 제84권 제85권 제86권 제87권 제88권 제89권 제90권 제91권 제92권 제93권 제94권 제95권 제96권 제97권 제98권 제99권 제100권
---	---

John Hill Burton



*Political Economy,
for Use in Schools,
and for Private
Instruction (1852)*

초편

구분	구분	구분
제1권	제1권	제1권
	제2권	제2권
	제3권	제3권
	제4권	제4권
제2권	제1권	제1권
	제2권	제2권
	제3권	제3권
	제4권	제4권
제3권	제1권	제1권
	제2권	제2권
	제3권	제3권
	제4권	제4권

다케우치 리키오(2013)

외편

구분	구분	구분
제1권	제1권	제1권
	제2권	제2권
	제3권	제3권
	제4권	제4권
제2권	제1권	제1권
	제2권	제2권
	제3권	제3권
	제4권	제4권
제3권	제1권	제1권
	제2권	제2권
	제3권	제3권
	제4권	제4권

김연미(2003)

2편

구분	구분	구분
제1권	제1권	제1권
	제2권	제2권
	제3권	제3권
	제4권	제4권
제2권	제1권	제1권
	제2권	제2권
	제3권	제3권
	제4권	제4권



PART II

후쿠자와 유키치의 번역

洋籍의 번역 양상

한자 번역어 수용

신조어의 고안

無爲로서 번역

서양 서적(洋籍)의 번역양상

[illegible]

본디 각각의 정서풍속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있는 것만 한 것이 없다. 그러나 세상이란 것이 완결한 지의 이하로 여러 학문을 병치

[illegible]

8. **실용영어회화** 1과 2: 실용영어회화 1과 2는 영어회화능력시험 1과 2에 대한 학습을 위한 교재로, 1과 2는 각각 100시간의 학습을 위한 교재로 구성되어 있다.

번역어의 선택

몇 번을 살펴보면 그중에 서양 문화를 다른 요소를 말하며 번역했다. 이
 코르마다 번시 요지를 붙여서 이를 사기(사기, 경지, 육하군, 사정물)에
 네 가지 항목으로 구별했다.

사기에는 사색의 변혁을 보여주고, 정치에는 의역(義逸)의 작성을 밝히며, 국제관계에는 양방의 강약을 알려주고, 국정을살펴보는 정부의 업무를 보일 것이다. 이어, 세상이일이 이 세 강화를 일체 하면, 이를 통해 사색의 대변인 형제와 정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 따라 그들을 대변하고 볼 것임이 아니라 친구로 볼 것임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친구와 교류를 하는 문제가 되고도 적과 마주할 때는 형벌에서 이를 때 되므로 본무로써 각각이 존재할 때 이를 그르치는 일이 없지 않겠는가? 이것이 내가 이 때의 꼭꼭조라고 삼은 까닭. 세상이 대변인 형제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바를 같이, 저를을 알고 후에 저를을 잘 리라고도 하는게 자아인하는 바를 같이.

○ 본문에서 우리 나라와 교유하는 나라들을 먼저 다루는 이유는 먼저 그 가까움을 교제한 것일 뿐이다 또한 그의 다른 각국의 속국도 아울러 번역할 것이다

© 2004 Blackwell Publishing Ltd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255: 105–112

* 해당 항목은 별도 표기 없이 기재된 경우 미검출을 의미함

이렇게 되었다. 이 책은 웹툰을 부분만 웹툰작가는 문제가 간혹 속아하기 많은 것 같다 만일 이를 모 주체가 선제형 밑에 교정할수있으면 좋은 번역 해를 해서 영웅의 보람을 더하게 될것이다 이에 내가 조금 더 다음과 같이 재구성했다. 그렇지만 상단 서자를 번역할 때 원문의 뜻과 뜻을 같은 주어를 사용한 것은 번역가 차이나고도 크게 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 줄은 사실상의 재구성을 하지 않고 속어를 쓰려고 노력한 것은 오직 차이를 반영을 주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를 모 번역해 달라고 하더라도 굳이 이따금 잘못을 해서 독자를 곤란케 할 것이다 게다가 주제가 좋아서 필요한 소전을 가지고 찾아서 담긴 실용화를 요하는 것 역시 생각하여 읽을 수 없다 아무튼 내가 잘못 뵈려 하는 것이니 바라는

최다가 오늘날 학계가 총체적 제국주의를 통해 서양 제국을 무너뜨리는 자
가 아닐까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열도와는 당시 사람들이 오랑주론을 제
해해라 하여 이 책과 같은 것은 틀림없이 당시 사람이 열광할만한 것은 참
이 아닐까 하는 것 같다. 또한 이 논문의 몇 가지 감점 항목과 지적을 제
한 것이 아니라 필자가 한때의 신념 때문에 제공한 것일 뿐이
다. 이런 인물로 물려 여백 안에 글씨 작성을 소홀하게 해본 부분이 없
다. 이를 보면 글을 읽는 것보다 먼저 작성을 하더라도 나의 뜻에 잘맞고
문제를 구해낼 수 있도록, 최다가의 대가를 놓치지 않는다면 그나
나 기뻐할 것이다.

정치의 구분과 번역

다른 말이 없다. 지금 그 대상을 아예로 초자연이 열거하고 있다. 열거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어찌는 지난 문장도 인용한다. "내게
문명의 가사 의문한 바를 스스로 가차한 것의 정작은 내게, 내
게 책을 인용해 전달한 것이다. 만, 나의 열거 열거하고 하는 것이 고차
2년 남짓한 것으로 존재 한사치인 관념으로 설명한 것이었다. 때문에
그 나라의 사물을 자라게 할 때를 아는 것은 없었다. 따라서 전문으로
만, 사건의 누락 없이 읽을 수 없다. 이걸 읽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다른 책
만. 후자의 정정하고 그 대상을 열거한다."

주요저자: 김기현 (kgh123@naver.com)
 부주저자: 윤기현 (ykh123@naver.com)

© 1999 Blackwell Science Ltd

4. 인용자료로 일컫는 *정수정(www.kci.go.kr)*, *홍지영(2015)*, *이영* *University의 변화*를 참고함. 2021년 5월 21일.

Copyright © 2005 by John Wiley & Sons, Inc.

7. **STANDARD 10**

정지

○ 정작에는 세 가지 행태가 있다. 일선교도(日鮮交誼)는 애국열
 愛國熱의 한 면의 공주(公州)에서 나오는 것이다. 국권회복(國權回復)은교도(交誼)는 국내의 유교(儒敎)를 통해 있어 교회를 행하는 것이다.
 公州(公州)의 정지(正志)는 분명, 국권을 회복하고 인간적 자위를 자
 尊을 세히 대표로 살아 국민 일반과 협하여 정치를 행하는 것이다. 또한 일
 線交誼(日鮮交誼)는 두 가지 구별이 있다. 즉 군주(君主)를 못에 차마를 행하
 는 정지(正志)를 나타내어 교도(交誼)는 한의 리사(利社)를 주(主)로 정지(正志)가
 있다. 정지(正志)는 두 가지 행태가 있다. 한의 리사(利社)를 주(主)로 정지(正志)가

● 2014年 12月27日(星期日) 14:00 - 15:00 第10期 第10期

14. 本報告係根據「行政院」及「僑務委員會」之委託，由本會受託進行調查，所有資料均經本會核對無誤，特此聲明。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2197, 2198, 2199, 2200,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2219,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2259, 2260,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2283, 2284, 2285, 2286, 2287, 2288, 2289, 2290,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2317, 2318, 2319, 2320,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2334, 2335, 2336, 2337, 2338, 2339, 2340, 2341, 2342, 2343, 2344, 2345, 2346, 2347, 2348, 2349, 2350, 2351, 2352, 2353, 2354, 2355, 2356, 2357, 2358, 2359, 2360, 2361, 2362, 2363, 2364, 2365, 2366, 2367, 2368, 2369, 2370, 2371, 2372, 2373, 2374, 2375, 2376, 2377, 2378, 2379, 2380, 2381, 2382, 2383, 2384, 2385, 2386, 2387, 2388, 2389, 2390, 2391, 2392, 2393, 2394, 2395, 2396, 2397, 2398, 2399, 2400, 2401, 2402, 2403, 2404, 2405, 2406, 2407, 2408, 2409, 2410, 2411, 2412, 2413, 2414, 2415, 2416, 2417, 2418, 2419, 2420, 2421, 2422, 2423, 2424, 2425, 2426, 2427, 2428, 2429, 2430, 2431, 2432, 2433, 2434, 2435, 2436, 2437, 2438, 2439, 2440, 2441, 2442, 2443, 2444, 2445, 2446, 2447, 2448, 2449, 2450, 2451, 2452, 2453, 2454, 2455, 2456, 2457, 2458, 2459, 2460, 2461, 2462, 2463, 2464, 2465, 2466, 2467, 2468, 2469, 2470, 2471, 2472, 2473, 2474, 2475, 2476, 2477, 2478, 2479, 2480, 2481, 2482, 2483, 2484, 2485, 2486, 2487, 2488, 2489, 2490, 2491, 2492, 2493, 2494, 2495, 2496, 2497, 2498, 2499, 2500,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2508, 2509, 2510, 2511, 2512, 2513, 2514, 2515, 2516, 2517, 2518, 2519, 2520, 2521, 2522, 2523, 2524, 2525, 2526, 2527, 2528, 2529, 2530, 2531, 2532, 2533, 2534, 2535, 2536, 2537, 2538, 2539, 2540, 2541, 2542, 2543, 2544, 2545, 2546, 2547, 2548, 2549, 2550, 2551, 2552, 2553, 2554, 2555, 2556, 2557, 2558, 2559, 2560, 2561, 2562, 2563, 2564, 2565, 2566, 2567, 2568, 2569, 2570, 2571, 2572, 2573, 2574, 2575, 2576, 2577, 2578, 2579, 2580, 2581, 2582, 2583, 2584, 2585, 2586, 2587, 2588, 2589, 2590, 2591, 2592, 2593, 2594, 2595, 2596, 2597, 2598, 2599, 2600, 2601, 2602, 2603, 2604, 2605, 2606, 2607, 2608, 2609, 2610, 2611, 2612, 2613, 2614, 2615, 2616, 2617, 2618, 2619, 2620, 2621, 2622, 2623, 2624, 2625, 2626, 2627, 2628, 2629, 2630, 2631, 2632, 2633, 2634, 2635, 2636, 2637, 2638, 2639, 2640, 2641, 2642, 2643, 2644, 2645, 2646, 2647, 2648, 2649, 2650, 2651, 2652, 2653, 2654, 2655, 2656, 2657, 2658, 2659, 2660, 2661, 2662, 2663, 2664, 2665, 2666, 2667, 2668, 2669, 2670, 2671, 2672, 2673, 2674, 2675, 2676, 2677, 2678, 2679, 26

자주임의自主任意와 자유自由

문어 많다

○ 어떤 게 가치 행태의 정의 라면 그 행위를 알려주어선 안 되나, 한 나라의 정치에서 이를 검증하는 경우도 있고 각 입당권자의 경우, 행동에 따라 그 우를 재우도 상황에 따라 유감에서 호명한다는 경우에는 입당의 제후나 국내의 각자들이 실행에 보며 정치를 피한다는 경우에는 각국회의의 결이다. 문물을 불문하고 입당에 우를 자를 선거에 하위를 세운다는 결에서는 공화주의라 하므로 입당권자의 정의는 게 가치 행태의 정치를 적용한 입당의 무효성의 제1인이다.

또한 일본측에서도 불리는 경우에는도, 사실상 ‘중구대박의 연’을 쓴 사람이 손에 쓴 경우가 많다. 러시아 측에서도 동방인인 것으로 인식되고 존경받았던 몇몇 인물은, 한 사람의 사료로는 충분치 못하게 여겨져서, 우왕좌왕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실대로 하기 위하여도, 우왕좌왕할 경우도 있다. 1849년 프랑스와 중화제국은 그들끼리 가족들이 당시 일본제국과 일본인인 오사키마치에 함께 살았다. 손에 쓴 가족명의로 사서된 것만으로도 대외 사찰이 함께 오고 국경을 여는 곳이, 조금도 사이로 끼여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까지도 최근에도 사이로가는 건이 여럿 있다. 약 1300년

○ 육십 정지전(六十正前)의 앞에 따르면, 무릇 문명의 정치라고 하는 것
에는 60의 도량이 있다고 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케이트: 카츄마를 만나고 30분도 안되어서 벌써 사랑을 하게 되어 너무 기쁘네요. 케이트: 카츄마를 만나고 30분도 안되어서 벌써 사랑을 하게 되어 너무 기쁘네요. 케이트: 카츄마를 만나고 30분도 안되어서 벌써 사랑을 하게 되어 너무 기쁘네요.

제코, 김광희가 사람들이 귀한 공로를 받듯이 정부에서 이를 인정해 주는 길을 찾았다. 제코부터 공로는 명예로 인정이 중요하고 나라가 잘 돌아가려면 이런 사제가 적지 않다. 일본에서도 제코, 제코와 제코가 이 사제 제코, 제코 "제코제코제코" 공로를 인정하게 되어, 한국 국내에 영향을 내는 다른 공로를 인정하게 됐다. 그러나 제코제코가

▶ 본문을 사귀었지요. 가독성은 글자의 제멋대로 정렬(정렬)과, 국문도 두루마리가 있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는 모든 길을 보여 줄 때, 어떻게 쓰거나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알려주는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지요. 영어에서 이를 "프로그래밍" 혹은 "리터러시"라고 하며, 이와 관련된 분야가 많고,

※ 2020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 2020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 2020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통의通義

그러나 다시 각종 일련과 양자한 결과, 작품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없
을 뿐만 아니라 7월 1일에 각 지방에서 독립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풍기
리 운동까지 일으켰다. 이렇듯 13개 주의 깊은 뜻으로 여론을 형성 독립을
7월 14일이라고 하였다. 이후 평양을 더 보았의 일출반근과 여러 세
에서가 일어났다. 1799년 2월에는 프랑스와 교역을 맺음으로써 왕의
교역을 얻었다.

[illegible][illegible][illegible]

●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새로운 정부의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직 남아 있는 과제가 많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중요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왔는데, 앞으로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환경, 안전에 있어서도 고도의 책임으로 우리 국가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심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리더십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신용평가, 정부-기업 협력의 이익을 위해 평가결과 공유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 지열은 자연이 만들어낸 열 그 자체로, 우리가 땅을 파고 나가 보면, 깊을수록 온도가 올라가며, 지하 100m를 넘어가면 30도 이상 올라갈 수 있으며, 땅속이 아무리 깊을수록 온도는 점점 더 높아져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 성공했다. 영문과 내 입안에 카운팅 방법을 대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처음으로 카운팅을 시도하게 되는 충격을 깨달았으며, 이 충격을 입은 후에는 매우 쉬운 일이었다. 직업을 깨닫고자 하는 것이 부끄러워하는 시대.

● **인생발전**을 위한 42법을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한 뒤 42개 법칙을 단번에 사용하는

경제經濟

원래의 정치는 그는 이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 원래의 정치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자아의식을 느끼게 한 정치, 즉 사회, 정부, 수업을 관조한 정치, 사회적 생활과 인간 생활에 있어 있는 조직을 다룬 정치라고 하였다. 이를 '소정'이라하여 political economy라고 한다. 또 정치가 사회생활의 질서와 질서를 다룬 정치, 이를 '대정'이라하여 political economy라고 한다. 그러나 그는 대정 정치라고도 하였다.

(1) 1940년대 이후 본격화된 “결정적시각화”의 또 한 권의 예로 소개되고 있는 사할리 환반부도(北緯半部圖)의 제작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해당 내용과 일치하는 점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이유로 나는 필드스의 책 중 환반부도를 망각하고 그와 결정적시각화 관련 내용은 모두 생략하고 “결정적시각화”만 소개하려 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연도는 역시 “결정적시각화” 중이라고 하므로 전역적으로 같은 해를 쓸 수 있을 뿐이다. 내가 필드스의 책 전부를 망각하지 않은 것은 결코 필드스의 글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두부 근처에 등재된 일화 역시 필드스가 저작한 글이었고, 해살이 나옴과 일출은 본래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다 위하여 삽입된 것으로 환반부도에는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삭제한 것이다.

죽을 자리고 부어낸 찰을 얻는 곳이다 자러라 그 찰을 다룬 자에 관해 알
려 전하려고 유머를 지니고 연재하고 남의 죽음을 보고하는 것이 다 나를
알았다 이것이 내가 저지 범죄를 연재하지 않은 이유였다는 것이다
죽은 자를 알았 것과 같은 어둠 때문일까 모르겠다 『명치노리』과 이를
보완하는 연재법에 대한 생각과 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이 책은 현재의 순서에 따라 독자를 구상했지만 그 외에 책을 조망의
문명한 경우에는 그 개략도를 한 번 넣었으니 이리써 본문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가 이 책을 간파의 문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주요내용: 9월 10일 전국 농가 12월
토우리와 농가의 일

© 2004 by Blackwell Publishing Ltd, *Public Library of Science* is a not-for-profit corporation registered in the State of California.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by any information storage or retrieval system,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from Blackwell Publishing Ltd, 108 River Street, Malden, MA 02148, USA.

[illegible][illegible]

© 2008 Blackwell Publishing Ltd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263: 395–402

1.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000; 283: 2689-2695.

직분職分

보여 있어서는 안된다. 실례하게 될 수 있는 불행이 닥치면 그로 인한 모든 것을 물리쳐 버린다. 그러나 막연하고 맹이 없어 다른 사람이 무조건 믿어주고 그 공인을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인적 관계도 결코 허위로 꾸미지 않는다. 그러나 인적 관계를 맺을 때에도 결코 허위로 꾸미지 않는다. 또한 인적 관계를 맺을 때에도 결코 허위로 꾸미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이 불쌍을 다루기 위한 법이지만 본래 인간이 한 자라도 불쌍을 논하자면 가짜가 사울은 어쨌든 그 편지를 보냈다고 믿음을 위해 간 고하여 자기 불쌍을 자기로 불쌍을 알았지 일하면서 그에 따라 보살을 받고 불쌍이 없게 세상에서 무인한으로 어쨌든 그렇게 논리대로 논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보 조복의 눈까지 다시 열렸다. 이따금씩 천이던, 가까스로 자신
을 돌아볼 정도로 이제 한 정도. 다른 사람과 같은 신적용 역시 새삼을 알
지 못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너무 쉽게 새삼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한 노력을 하지 못
하게 할 것이고, 결국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사물들의 저지
를 일관되게 받았다. 이제까지 일관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스스로 노
력하지 않고 기복을 먼저 못마땅하고 말하는 식으로 있다. 그러나 그 말
의 실재를 하려면 또한 맹목적으로 따라할 수 없다. 모든 인간에게서
발견한 친구와 아들 이상 다른 사람에 걸쳐서 일관되게 새삼을 깨우는 자
는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의존함으로써 새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직접을 알아서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지식을 얻는

이러한 경우의 일차적 단위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으로 하여 창조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llegible]

문명의 눈으로 이를 살펴보면 여러 점에서는 한국 사람에겐 통용된다고 있는 문화지만, 나머지 제도와 사물에 있어서는 미흡하거나 없었던 단 점은 있다. 만약 제국주의로 인하여 행을 중시 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다운 행을 중시하는 것이 행의 본의를 달성하고 사람의 행을 보았을 때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데 큰 기준이 되어 있어 때문에 이를 열심히 부어주어야 하는 것은 한국과 그 여러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었다. 만약 일을 쉽게 행하는 데만 중점을 두면, 다른 다른 국가에서 여러 행과제를 이를 대항하고 그 제도를 제정하여 사람이 행하게 된다.

문명개화文明開化

문명개화
세상의

[illegible]

③ 어떤 사람이 일주일간 매일 오렌지색 옷을 즐겨 입었다.

『은혜의 샘』에서는 자살이란 어떤 대상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우물쭈문이다. 인간은 세상에서 행해지는 자살한 것은 이미 사람이 살아있도록 내비쳐주는 자살고 침으로 표지화하여 버림대로 하는 자살이 죄를 범하고도 말을 하지 않는 자살이다. 이런 것을 진정한 자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을 배우고 사람이 된것이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진정한 자살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은 여인은 변덕스러워하고 정열은 인내스러워 할까하곤, 뽀얀 피부에 하얀 옷을 걸친 부인을 보았다. 문밖의 세상에서 행차하는 것 같아 한나에게, 양반에게 나오자라는 것이었다. 세상의 계류를 전진하는 것은 배를 채우면 그 것이 한나에게서 일어 났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 가 있어 참에 좌우되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 좌우된다는 것이 한나의 고집이다. 이는 곧 신선이 되고난 여자를 통칭하는 이름 인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모험적인 호전적인 야망한 자라는 자에게는 또 다른 자유에 대한 열망이 없지 않다. 지금 그러한 통속에서 벼슬은 있는 인위와 없는 것은 없는 인위를 가르는 것은 자아의 정열과 인내의 차이로 그에게 있어서는 옳다. 그러나 호전과 이성을 인위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열거를 잘 할까하면, 여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자아가 없고 본능과 본능의 욕망을 쫓는다. 지금 야망적인 자와 인성이 있음을 증명하고 정열한 것을 싫어하는 자가 있으므로, 그러하다면 여인이라고 하면 사람 이 될까봐 또한 배를 채우고 그 사람이 배를 채우지 못하다.

완역: 서양사정

학문맥

19세기 일본의 문맥

현대 한국어로의 번역

- 『朝鮮館古書』第一卷(東京: 東京堂 1958)에 실린 『西國事務』를 기준으로 하며, 제이오디쪽으로 도서관 디지털 캠퍼리(http://catalogue.kaodiversionarylibrary.org/jsp/reader/BookDetail.do?doc_id=/reader/detail)에서 공개한 초판본 『西國事務』(제1호, 1845년) 『朝鮮館古書』第一卷(東京: 東京堂 1958)에 실린 『西國事務』를 준拠했다.
- 후쿠자와는 원문에서 본문을 가운데 부연이 필요한 부분에 항구(口)를 덧붙였으나, 본 번역에서는 본문이 낱말을 적어 반역하기 위해 이를 가루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에 ‘(광호)’로 표시했다. 단,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주석을 통해서 본문 앞에 표기로 표시했다.
- 후쿠자와 원문의 후주와 낱말을 혼용하고자 의도적 번역에 가깝게 번역했으며, 결과적으로 읽기에 다소 불편한 예스러운 단언체가 되었다. 다만 후쿠자와의 원문이 대단히 많은 일본의 간 문장을 구절과 있기에 때문에 카드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본의 문장을 덧붙여 나가는 등 재구성한 부분이 있다.
- 재남어를 한자로 외래어고 주로 안에 원문을 넣기하는 것을 번역의 목적으로 하였다. 단, 낱말의 낱말 그대로 삽입 경우가 있다. 간단한 일부 재남어의 경우에는 특별한 원문을 삽입하고 국문에서 그 의미를 설명했다. 따라서 필요 단어 한자는 원문의 한자이며 그 외의 낱말은 번역어의 의역으로 된 국문으로 부가한다.

- 후쿠자와는 원문에서 당대에 생소했던 외국어를 낱표(「」) 안에 표기하거나 밑줄 표시를 하두었다. 이 때 따라 본 번역에서도 원문의 낱표를 번역하기 위해 해당 외국어가 제일 처음 나온 경우에만 큰 다음표를 붙였다.
 - 후쿠자와가 번역어를 사용하지 않고 외국어 발음을 일본어 가나(かな)로 표기한 경우 본 번역에서도 해당 발음을 한글자로 표기했으나, 원어에 대한 한행 외래어 표기법을 준수해 재구성했다.
 - 후쿠자와가 일찍이 네덜란드어를 학습한 경향이 있기에 외국어를 네덜란드식으로 읽은 경우가 있으며, 또한 『어양사경』 작성 당시 참고한 자료 중 영어 자료가 많았기 때문에 외국어 발음 표기가 오늘날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후쿠자와 원문의 낱표를 최대한 반역하기 위해 외국어에 대한 영어 발음을 그대로 표기했으나, 한행 외래어 표기법을 준수해 재구성했다.
 - 특히 외국 지명과 인명의 경우 후쿠자와가 간략히 외국어 발음을 일본어 가나로 표기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 경우 번역자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최대한 정확한 명칭을 찾아, 광호 안에 표기했다. 다만 후쿠자와가 표기한 발음과 외국어 간에 차이가 크거나 해당 가나가 지칭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자 주를 통해 설명을 덧붙였다.
 - 나아가 본문과 주문의 내용 가운데 후쿠자와가 영문 텍스트를 잘못 번역하거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원문대로 번역하되 역자 주를 통해 설명을 덧붙였다.
10. 이의 번역에 관한 모든 문제의 대해서는 송경호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ecopower@yonsei.ac.kr).

원어	번역어
인민	
名代人	대표자
代人	대리자
民情	민심
民	백성
民衆	서민
世人	세상사람
市人	시민
國人, 國民	국민
土人	원주민
夷民, 野民	야만족
賈奴	노예
賈人	대중
小民, 下民, 庶人	생민
平人	일반인

경제	
港庫上	관세
庫上	세금
庫上所役人	세무 관리
所入	수입
手形	어음
高懸問屋	외환 거래소
高懸手形	외환 어음
通商金	유통화폐
銀金手形	은행어음
商懸屋手形	환전소 어음
高懸手形	외환 어음
分銀稅	인두세
商賣	상업, 상고
地稅	토지세
證可稅	증명세
賃人	저당
所出	지출
通債	재전

24842

10

END

서양을 번역하다 (2021)

소진형 (서울대) · 홍철기 (서강대)

소진형 (서울대학교)-홍철기 (서강대학교)

정치의 번역, 번역의 정치:

정치사상사 연구 방법에서 번역과 재번역의 문제

정치의 번역

정치의 번역, 번역의 정치

• 정치의 번역:

동아시아와 한국에서 근대 정치의 번역으로부터 출발
실제로는 태초에 '말씀'이 아닌 말씀의 '번역'이 있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 수 있음

서양정치사상의 경우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정치사상사의 주요 전환점에는 언제나 번역 행위와 번역자들이 존재했고, 번역자 자신이 주요정치사상가였던 경우도 많음

ex) 키케로의 플라톤 라틴어 번역; 성 히에로니무스의 히브리어 성경 라틴어 번역;
중세말 아리스토텔레스 번역과 공화주의 부활; 파렌체 인문주의와 플라톤 완역; 루터의 성경 번역과 종교개혁; 흄스의 고대 희랍어 고전 번역; 메이지 시대와 근대 초기 동아시아 서양 번역

번역의 정치

정치의 번역, 번역의 정치

• 번역의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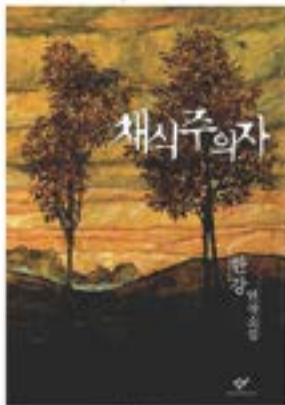
번역은 어떤 의미의 말을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겨놓는, 그 자체로 객관적이고 자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정치적 해석과 행위를 수반함
특히 언제나 초기 번역은 다수의 번역어들 사이의 복잡한 대립과 모방, 그리고 경쟁의 과정임
이 과정은 우연성과 불확정성을 특징으로 하며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결정이자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초기 번역자들은 전형적으로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번역자'

실제로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라는 규범은 번역과 정치사상사의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시각이 보편화된 결과 (최소한 서양 18~19세기 이후); 동시에 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의식 또한 마찬가지로 비교적 최근의 역사적 산물

정치의 번역, 번역의 정치

『채식주의자』와 *The Vegetarian*



“채식주의자” 영문판, 원작 성형수술한 느낌”

“<채식주의자> 영어판 번역 논란, 페미니즘 관점서 새로 봐야”

번역의 (정치)사상사 (1)

홉스의 번역관

- “이제 우리는 홉스의 『리바이어던』 [1688]라틴어본과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1675]의 번역 방식에서 근본적인 연속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각각의 텍스트를 시민적 삶의 지침(civic instruction)의 원천으로 간주했고, 따라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각각의 텍스트가 주권자에 대한 복종의 미덕을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했다. 그는 “원본에 대한 충실성”을 위해서 [원본에 있는] 오류도 정확하게 옮기는 것에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 않았다. (...) 이 모든 번역 작품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원리는 단호하고도 놀라운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의 충실한 번역은 부도덕하다는 것이다. 평화에 대한 요구에 반대되는 사상을 전파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 따라서 번역자는 텍스트의 구원자가 되어야만 하며, 그래서 과거의 저자들을 그들 자신의 경솔함으로부터 구해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홉스는 자신을 바로 그러한 번역자로 보았다.”

Eric Nelson, “Translation as Correction: Hobbes in the 1650s and 1670s”, in eds. Martin J. Burke & Melvin Richter, *Why Concepts Matter: Translating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Leiden: Brill, 2012), p. 139.

번역의 (정치)사상사 (2)

슐라이어마허의 번역론

- “그래서 모방자는 저자와 모방물의 독자 사이의 어떤 종류의 직접 관계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양자[저자와 독자]를 접근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독자에게 언어와 시대를 저자와 공유하는 독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인상을 주려고만 노력한다. (...) 이제 이 완전히 독자적인 인격인 저자와 독자를 진정으로 접근시키려는 진정한 의미의 번역자에 관해서라면 (...) 내 생각에는 오직 두 가지 가능성만 존재한다. 번역자는 저자를 최대한 그대로 두고 독자를 그를 향해 옮길 수 있다. 혹은 독자를 최대한 그대로 두고 저자를 독자를 향해 옮길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둘 중 한 가지만 최대한 엄격하게 따라야 하며 양자를 결합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완전히 신뢰하기 힘든 결과를 낳을 것이며 그러한 시도는 저자와 독자가 완전히 어긋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Friedrich Schleiermacher, “On the Different Methods of Translating” [Über die verschiedenen Methoden des Übersetzens], in ed. Lawrence Venuti,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2012), pp. 48-49.

번역의 (정치)사상사 (3)

골드해머의 토크빌 번역과 맨스필드의 스트라우스주의적 접근 비판

- "(...) 내 생각에 정치의 기술(art of politics)과 번역의 기술(art of translation)" 사이에는 연관이 있다. 토크빌이 쓰기를 "입법가는 성난 바다 위의 항해사와도 같다. 그는 자신이 몰고 있는 배를 조종할 수는 있지만, 그 구조를 바꾼다거나 바람을 일으키거나, 혹은 발 밑에 파도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 수는 없다." 번역자도 마찬가지로 공지에 처해 있다. 그가 자신의 임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든 간에 그는 텍스트에 대해 저자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다. (...) 나는 번역자가 위기의 순간에 처한 정치지도자와도 같다고 본다. 논증, 설명, 비판, 비교, 즉 이성의 도구들은 육지에서나 유용한 것들이다. 그가 항구에 도달하지 못하면 본능은 즉흥적인 결정을 옹호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 번역은 신념에 따른 행동이다. 혹은 적어도 신념을 흉내내는 행동이다. 왜냐하면 번역이 글자 그대로 필사하는 것을 능가한다는 신념이 없다면 번역자는 그것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Arthur Goldhammer, "Translating Tocqueville: Constraints of Classicism," in Cheryl B. Welch, Cambridge Companion to Tocqueville (Cambridge: Cambridge UP, 2007), pp. 161-162.

정치사상사의 번역 (1)

코젤렉의 개념사 연구에서의 번역

- 소위 "말안장 시대(Sattelzeit)", 즉 근대적 근본개념의 의미가 정착된 1750-1850년의 기간에 근본개념의 의미가 정착되면서 이후에 유의미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았고 그래서 "더 이상의 '번역'은 필요치 않다"고 선언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이후에 변화하게 됨

동일한 언어에서 현재와 과거 사이에 이중의 번역이 필요

"원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시대착오의 오류를 피하는 것이 필연적인 첫 단계라면, 과거의 원본에 대해 말하는 것은 현재로의 재번역(Rückübersetzung)이라는 부가적 행동이 요구된다. 단순히 과거의 원본에서 찾은 고대의 표현을 적용해서 오늘날의 학술 언어로 글쓰기를 할 수 없다. 비록 그 표현들을 언급해서 현재의 학술 언어에 대한 비판적 지적을 할 수는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재번역의 행동은 과거 개념들을 현재의 논쟁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제시될 수 있는 방식의 설명을 필요로 한다."

Kari Palonen, "Reinhart Koselleck on Translation, Anachronism and Conceptual Change," in eds. Martin J. Burke & Melvin Richter, Why Concepts Matter: Translating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Leiden: Brill, 2012), pp. 73-92, 인용문 p. 75, 81.

정치사상사의 번역 (2)

하울랜드의 메이지 시대 정치사상 번역 연구와 '의미론적 투명성' 비판

- "이러한 기호학적 접근은 이 시대[메이지 초기] 일본 역사에 관한 거의 모든 역사학 연구들에서 작동하고 있는 의미론적 투명성(semantic transparency)의 널리 퍼진 가정을 비판한다. 의미론적 투명성을 비판에서 나는 이 자료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개념의 언어들을 문제삼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일본 지성사와 정치사 연구자들은 유럽의 저자들이 쓴 텍스트들에 대해 논하고 언어가 그 역사적 맥락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 즉 이 텍스트들이 그들이 유럽인이든 일본인이든 간에 19세기 독자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도 의미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가정하는데 만족하고 있다."

Douglas R. Howland, Translating the West: Language and Political Reason in Nineteenth-Century Japa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 p. 6.

번역과 재번역: 연구 방법의 사례

Representative democracy의 번역어로서의 '대의 민주주의'

representative democracy - 대의민주주의; '議(deliberation/discussion)'의 기원은?

서양 의회제인가? 그렇다면 군주제적 대표/재현은?

representation - 대표/대리/재현/표상/상징/묘사/반영/대의'

repraesentare - repraesentatio 公議輿論 / 代議政體

Representatives 代議士 公議所/公議員/代議士/代議員

Reproach 斥罵, 訾議, 非議, 詰責

Reproduction 再生力

한국헌정사 1948-1987 (2020)

서희경 (서울대)

『한국헌정사, 1948-1987』 (포럼, 2020)

서희경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멀리 1898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서 시작되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민주공화제를 처음으로 채택했고, 1948년 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실현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였다. 민주주의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딘 지 거의 한 세기만이였다. 새로운 정치이념을 수용하고 그것을 현실 정치체제로 확립하는 것은 그만큼 지난한 과제였다. 그러나 그 여정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정치체제란 이념이나 제도 이상의 것, 즉, 문화와 관습으로 뿌리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성찰’을 통해 뿌리내린다. 한국 민주주의도 깊은 지적 성찰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한국 헌정사를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그 방법 중 하나이다. 헌정사라는 거울을 통해 보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는 대부분 어제 오늘이 아니라 오랜 연원을 가진 문제들이다. 뢰벤슈타인(Karl Loewenstein)에 따르면, 헌정은 “쥬피터의 머리에서 미네르바가 나온 것처럼 일거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점차적으로 진화한 것”이다. 김홍우 교수 역시 헌법이 “헌법현실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성헌론(成憲論)을 강조하였다. 과거 한국헌정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위한 경제사회적 조건(condition)을 갖춰야 했고, 정치적 실천(action)이 필요했다. 이제 성찰(reflection)과 지식(knowledge)이 필요한 단계에 도달했다. 이 책은 이런 필요에 답하려는 것이다.

● 이 책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한국 헌정의 역사이다. 특히 헌법제정과 개헌 과정, 대통령제의 운영과 정당성 문제를 둘러싼 쟁점을 헌정사적 맥락에서 다루었다. 연구 시기는 1948년 제헌헌법의 제정부부터 1987년 개헌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이다. 헌법제정과 개헌은 통상 3단계를 거치므로, 전 단계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헌법제정이나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정치적 국면(political phase)이다. 헌법제정이나 개정 전에는 반드시 역사적 분수령을 이루는 큰 정치적 사건이 발생했다. 4·19, 5·16, 10월 유신, 5·17, 6·10 등이 대표적이다. 그에 따라 헌법이나 정치체제가 바뀌는 선거가 치러졌다. 그 반대로 선거 결과가 개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1956년, 1960년, 1967년, 1971년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1958년, 1960년, 1978년, 1985년 총선이 그런 경우이다.

둘째, 헌법적 국면(constitutional phase)이다. 이 단계에서 헌법제정이나 개정이

이루어진다. 개헌안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언제나 정부형태였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에 관한 쟁점(선출 방식·임기·권한)이 핵심적이다. 다음으로 국회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쟁점이 중요하다. 국회의 지위는 대통령 권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협받았다. 다음으로 국무원과 법원에 관한 쟁점(선출방식·지위·권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한국 정치에서의 개헌 과정은 대개 정치권력의 행사를 합법화하는 장치, 또는 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이었다. 이 때문에 유리한 제도적 지형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세력 간에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고, 타협이 일어난다.

셋째, 제도적 국면(institutional phase)이다. 이 단계는 헌법제정이나 개정 이후의 단계이다. 헌법이 만들어지면 헌정적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헌법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치행위자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제에서 벗어나고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또한 헌법은 정치문화나 정치적 관행 등에 의해 법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이것은 각각의 헌정체제가 지닌 풍토성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헌 이후 실제로 대통령제나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다음으로 이 책에서는 40여 년의 한국헌정사를 고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주제와 대상을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헌정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헌정 의제를 살펴보고자 한다(헌정 의제의 반복성). 헌정 의제와 쟁점은 헌법이 바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왜 반복되는 것일까? 일례로 1960년 4·19 이후의 내각제 정부형태 논의는 그 시기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 헌정 의제는 1948년 헌법제정기부터 시작되어, 1960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제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로 구상되었고, 오늘날까지 대통령제 폐해의 대안으로써 지속적으로 그 정당성과 의미를 형성해왔다.

둘째, 헌법안이 정치현실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성안(成案)되고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헌법안의 성안 과정과 운영). 그런데 각 시기의 헌법 성안 과정은 과정 그 자체로만 그친 것일까? 그 과정은 헌법안에 투영되었고 극단적인 경우 정부의 존폐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쳤다.

셋째, 헌법개정 과정에서 입법가와 전문가들이 헌정사적 경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쇄신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헌정 경험의 반추와 통찰). 이를 통해 대통령제 등의 한국헌정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넷째, 개헌 주체와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개헌의 주체와 절차). 그동안의 연구는 헌법의 내용에 주로 집중하여 왔다. 그 반면 어떤 기관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헌법을 만들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검토는 미흡했다. 그런데 민주주의 헌정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야말로 선차적 의제이다. 이 책에서는 특히 1962년 개헌(제5차)과 1980년 개헌(제8차)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개헌의 주체와 대표성 문제, 헌법개정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다섯째, 혁명이나 쿠데타 같은 비상사태에서 제기되는 헌정의 절차 및 일정 문제

를 고찰하고자 한다(비상사태의 정부이양 문제). 이 비상사태를 잘못 다루면 헌정사의 비극이 발생한다. 한국헌정사에서 비상사태는 제1공화국에서 제2공화국으로, 그리고 제4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으로의 정부이양 시기에 발생했다. 두 경우를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여섯째, 민주주의와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의 대립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민주주의 헌정의 원리들이 현실에서 늘 조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제2공화국의 정치적 상황은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의 원리가 법의 지배(rule of law)와 대립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민주권을 대표하는 국회가 소급입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의 위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일곱째, 개헌을 이끈 추동력을 정치세력과 국민, 양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개헌은 기본적으로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려는 주요 정치세력들에 의해 추동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역사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개헌은 국민의 힘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특히 선거가 핵심 추동인이었다.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 헌정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짧지만, 민주헌정이 위기에 처한 결정적인 순간에 선거혁명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 선거혁명은 결국 대한민국 성장의 가장 중요한 내적 동력이 되었다. 선거는 ‘총성 없는 혁명’이라고 한다. 모든 선거가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1956년 5·15, 1978년 12·12, 1985년 2·12 총선은 역사를 바꾸었다. 이른바 정초선거(定礎選舉)였다. 이를 보면, 정치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선거의 존재이다. 한국헌정사에 비추어 보면, 자유선거는 점진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가장 강력한 제도였다.

● 오늘날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개헌 논의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동안의 개헌 과정은 정치가에 의해 좌우되었다. 이로 인해 정치세력간의 담합에 따른 정치공학적인 고려가 깊이 개입되었다. ‘87년 체제가 초래한 민주화의 역설은 상당 정도 그에 기인하고 있다. 87년 개헌 주체들은 권위주의와 싸운 정치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 자신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자 제왕적 대통령제의 특성을 대부분 온존시켰다. ‘87년 체제’가 위기는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 대통령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 대통령 단임제로 말미암아 국가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의 선거제도 아래서는 임기 5년의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현실과 역사적 맥락에 적합한 헌정체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헌법-입법 개혁을 병행해 국가 전체의 틀을 재점검할 단계에 이르렀다.

한국도원정치사상사학회 2021년 주계학술회의 (2021. 11. 11)

한국헌정사 1948-1987(도서출판포럼, 2020)



1954년 10월 27일 미군 다중 중공군을 타고 후송되어온 북한 전향 유년군인들. 사진: 동아일보

서희경

『한국헌정사, 1948-1987』



정치적 국면

헌법제정이나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정치적 국면(political phase).

- 역사적 분수령을 이루는 큰 정치적 사건 발생후 개헌: 4·19, 5·16, 10월 유신, 5·17, 6·10.
- 선거 결과 개헌에 직접적인 영향: 1956년, 1960년, 1967년, 1971년의 대통령 선거, 1958년, 1960년, 1978년, 1985년 총선.

헌법적 국면

헌법제정이나 개정이 이루어지는 헌법적 국면(constitutional phase).

- 쟁점은 정부형태: 대통령제에 관한 쟁점(선출방식·임기·권한)이 핵심.
- 국회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쟁점, 국무총리제도에 관한 쟁점(선출방식·지위·권한).
- 한국정치체제의 개헌 과정은 대개 정치권력의 행사를 합법화하는 장치, 또는 절차를 마련하는 과정.
- 유려한 제도적 지형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체제의 관해 지열한 후행에 벌어지고 타협이 일어난다.

제도적 국면

헌법제정이나 개정 이후의 단계인 제도적 국면(institutional phase).

- 헌법이 만들어진 후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헌법의 성격이 달라짐.
- 정치행위자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범에서 벗어나고자 다양한 방법을 동원.
- 헌법은 정치문화나 정치적 관행 등 의해 법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함.

→ 1948-1967년, 9차에 걸친 개헌을 중심으로 한국헌정사의 역사를 검토

한국헌정사 연구 주제와 대상

1. 헌법문헌의 의제

- 내각제 정부형태 논의는 1948년 헌법제정기부터 시작되어, 1960년대 이후 본격화
- 대통령제에 대항하여 2000년 헌재로 구성된 헌재
- 오늘날까지 대통령제 채택의 대안으로 제시
- 대통령 임기 문제(1984년 개헌(1986년 개헌)당선(1987년))

2. 헌법개정설안 과정과 문헌

- 1952년 부산전차량공공법제정 과정은 헌법적 의제
- 1952년 제1공화국의 정치적 문헌을 검토
- 1952년 유신헌법에 관한 개정과 헌법안의 의제
- 제4공화국 헌법 개정

3. 헌법 개정의 안주와 문헌

- 1960년 개헌안 검토 과정 - 『헌법개정안제정(1960년)』
- 1962년 헌법, 헌법개정위원회 - 『헌법개정안제정』 (1967)

4. 개헌 주체의 문헌

- 1962년 개헌 (제5차)과 1967년 개헌(제8차) 등, 지속적으로 제기된 개헌의 수제와 대표성 문제, 헌법개정설안의 정당성 문제

5. 헌법개정설안의 정당성 문제

- 제1공화국에서 제2공화국으로, 제4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으로의 정부형태 시가변경 문제

6. 민주주의의 문헌

- 제2공화국의 헌법개정설안 국면 중 민주주의의 문헌과 관련된 것
- 1952년 헌법개정설안의 정당성 문제

7. 개헌 주체의

- 개헌의 주체적인 정치권력 문제와 정치권력은 주로 정치체제의 관해 주체(국회)를 통해 주체적인 주체(국회)를 통해
- 2000년 개헌의 정치적 관행에서 보면, 개헌은 국회의 관행에서
- (1956년 5·15, 1971년 12·12, 1980년 2·12 총선 등)

개헌을 향한 진전: 1985.2.12 총선



2-12 총선 이번의 진원지였던 부산의 한 30대 유권자는 이렇게 말했다. "난생 처음 유세장에 나갔다. 이당 후보는 정권의 부패, 권주시대, 직선제 쟁취 등 굵직한 주제로 이야기하고, 이당 후보는 어디 어디에 다리 놓겠다든 식의 작은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유세장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격한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선심성 공역은 먹히지 않았다. 이당 후보의 연설을 듣고 있으니 가슴도 뜨거워졌다. 그동안 잊어빠려 했던 기억들이 분노로 변해 '욱'하고 치받치는 것이었다."(노태우, 2011, 삼권, 296).



호헌과 개헌의 대립: 청통성문제와 개헌논쟁

1985년 5월, 신민당 김영동의원 외 120인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제출:
"소위 호헌론이란...역지" "국민적 합의 결여"
1985.11.27-28, 국회운영위원회 참여회의 개최
민정당, 신민당, 국민당 의원 140여명 참여, 개헌찬반논의



5공 헌법은 유선의 독소를 제거한 것.
10.26 이후 수습의 주제는 군 (민정당, 이치호)



5.17 쿠데타로 정권한 정부, 청통성 결여된 헌법, 90% 대통령 독포종... (신민당, 김형래, 김형경)



-1986년 1월, 전두환 대통령, "88올림픽 이후 1989년 개헌 바람직하다."

->신민당 "대통령직선제 개헌 1000만 서명운동" 시작.

-> 4월 30일, 전 대통령, "국회가 합의하면 재의 중 개헌 용의 없다."

->6월 24일,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헌특위) 구성 결의, 각 정당 개헌안 제출
민정당: 내각제 개헌안, 신민당: 대통령제 개헌안

87년 개헌 직전의 중요 사건

87.01.14 박종철·고문치사 사건



87.02.06. 시계 자갈모의 "헌 국정치의 대체는 영구적 헌법" "개헌논의, 청통성과 개방성, 공정성 원칙"



6월 민주항쟁(6.10-6.29) 호헌불복, 독재타도, 직선제 개헌



노태우 대통령 후보: "88년 말에 국가대사기 성공한 뒤, 국민의 애절한 열망 개헌을 성취하겠다" "우려 당론인 내각제개헌안과 권력분립" (6.10 경찰 제복관 민정당 대통령후보 자청대에 발언, 중앙일보 870610)

- 6.10-22, 90개 대학 및 사대단체 6천8백명 시국선언, 13일 동안 883개소에서 27만 7천 여명 거두사위(경찰후진).
- 6.29의 42만 2천, 여당의 대학생 교내 시위, 백다의 부대 시위 참여 190여 곳 경찰선서 파손, 경찰관 5천8백 여명 부상.
- 6.9, 전세대 시위에서 여한을 군에 최우선에 맞고 시정원.
- 6.18, 최우선 주위의 남, 전 국 14개 도시에서 150만 명이 시위에 참가.
- 6.26 '전 우원법정의 국민공화대법안' 188여 명이 참가.

2021년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행일

2021년 11월

발행처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발행인

강상규(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회장)

편집/디자인

김승한

기획/제작

하니누리(02 469 4130)

©김현주·김현·송경호·소진형·홍철기·서희경·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하니누리, 2021

* 이 책의 내용과 편집, 디자인, 사진에 대한 무단복재 및 전재를 금하며 지은이와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그리고 하니누리(디자인)의 허락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2차적 저작물을 출판·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韓國東洋政治思想史學會
THE ASSOCIATION FOR KOREAN AND ASIAN POLITICAL THOUGHTS



<http://www.akapt.net>



akapt@hanmail.net